

박사학위논문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홍성선

2009년 2월

# Impacts of Awareness Factors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on Tax Compliance

Sung-Sun Hong

(Supervised by professor Sang-Bong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2009.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상 봉

홍 성 선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홍성선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2월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동기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2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7
제1절 납세의식개념과 지방세 체납 .....	7
1. 납세의식의 개념 .....	7
2. 지방세 체납 .....	12
제2절 납세의식영향요인연구의 접근방법과 선행연구 .....	15
1. 납세의식영향요인 연구의 접근방법 .....	15
2. 제도적요인과 선행연구 .....	18
3. 개인적요인과 선행연구 .....	26
4. 선행연구와의 차이 .....	31
제3장 연구 설계 .....	32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32
1. 연구모형 .....	32
2. 가설설정 .....	33
3. 설문지 구성 .....	37
제2절 변수의 조작적정의 .....	39
제3절 연구방법 .....	44
1. 자료수집 .....	44
2. 분석방법 .....	45

<b>제4장 실증분석 결과</b> .....	46
제1절 기술통계 .....	46
1. 표본의 특성 .....	46
2. 타당성 분석 .....	48
3. 신뢰성 분석 .....	51
4. 변수별 기초통계량 .....	52
5. 상관관계분석 .....	52
제2절 분석결과 및 논의 .....	54
1. 가설검정 .....	54
2. 가설검정에 대한 추가분석 .....	61
3. 가설검정결과의 요약 .....	61
제3절 추가분석 .....	61
1.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분석 .....	62
2. 불성실납세자 특성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분석 .....	64
<b>제5장 결 론</b> .....	72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	72
제2절 정책적 제의 .....	74
제3절 연구의 한계 .....	77
〈부록 1〉 설문지 .....	79
참고문헌 .....	85

## 표 및 그림 목차

〈표 2-1〉 2006년도 시·도별 지방세징수율과 체납현황 .....	12
〈표 2-2〉 2006년도 시·도별 지방세체납 사유별 현황 .....	13
〈표 2-3〉 2006년도 시·도별 지방세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15
〈표 2-4〉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	25
〈표 2-5〉 개인적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의 요약 .....	30
〈표 3-1〉 설문지 각 항목별 분류 .....	38
〈표 4-1〉 표본의 특성 .....	47
〈표 4-2〉 납세의식영향요인 타당성 검증결과 .....	50
〈표 4-3〉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	51
〈표 4-4〉 변수별 기초통계량 .....	52
〈표 4-5〉 납세의식영향요인과 성실납세의지의 상관분석표 .....	53
〈표 4-6〉 납세의식영향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 .....	54
〈표 4-7〉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	59
〈표 4-8〉 다중로짓 회귀분석결과 .....	60
〈표 4-9〉 성실,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분석표 .....	62
〈표 4-10〉 성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4
〈표 4-11〉 혼인여부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5
〈표 4-12〉 연령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6
〈표 4-13〉 교육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6
〈표 4-14〉 종사분야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7
〈표 4-15〉 소득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8
〈표 4-16〉 납부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69
〈표 4-17〉 납부기간별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70
〈표 4-18〉 부동산보유 유형별 납세의지영향요인 차이 분석표 .....	71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계 .....	33

## **Abstract**

# **Impacts of Awareness Factors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on Tax Compliance**

**Sung-Sun Hong**

Department of Accounting

Th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and even affects significantly their property right. For development of local administration and growth, it is important to obtain stable local tax. Thus, it is a critical task of local tax administration to build adaptability of local tax payers related to real estate toward tax payment.

The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awareness factors of tax payment suggested in precedent studies for real estate tax and to reduce delinquency so that local tax payers can secure tax compliance.

Subjects of the study are real estate tax payers related to real estate in 10 areas including Seoul, Gyeonggi, Incheon, Gwangju, Daegu, Gangwon and Jeju. For about 5 months from October 25, 2007 to March 15, 2008,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ails and direct interviews for 713 subjects.

In measuring the degree of awareness and willingness of tax payment by tax payment awareness factor, factors that affect willingness of tax payment include awareness of fairness of real estate local tax, understanding of local tax relevant to real estate, complexity of local tax, awareness on strength of



delinquency disposition of local tax and satisfaction of local tax administration service.

A dependent variable of the study is willingness of tax payment under a thesis "each awareness factor of local tax payment related to real estate affects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e study results are like followings.

First, the awareness of fairness of local tax, which is one of the awareness factors of local tax payment related to real estate, showed a positive result on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is implies that i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is recognized as fair, the willingness of tax payment increases.

For fair local tax imposition related to real esta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olicies such as differentiation between good and bad tax payers by introducing a deduction system of an acquisition and a registration tax for a reported tax payer and operating a standard of property tax assessment objectively and fairly.

Second, the understanding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had a positive result on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is shows that understanding of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which is knowledge related to local tax, can give significant impacts on sincere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us, a variety of promotions should be pursued such as a notice of direct estimated tax amount in order to help tax payers understand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Third, satisfaction on administrative service had a positive result on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satisfaction on administrative service brings the higher willingness of tax payment. Thu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administrative service and provide convenience of tax payment to local tax payers related to real estate.

Fourth,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ood and bad tax



payer groups about awareness factors of tax payment. Since there are many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awareness on tax payment between good and bad tax payers, detailed convenience policies for tax payers should be prepared to improve willingness of tax payment in local tax administration.

The study is restricted in terms of quality of survey methods and of generalization of social and time changes. A future study may prepare solutions for serious delinquents by comparing their awareness with other tax payers. There is a limit in various factors on tax payment due to lack of practical precedent studies about local tax related to real estate.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동기

조세는 과세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경제주체에게 강제부과·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는 국가가 국정수행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조세부과에 있어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소득이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으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경우에는 보유·취득하는 사실에 부과·징수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는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행위는 바로 국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국민의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안정적인 지방세수의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납세순응을 갖게 하는 것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금전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조세제도를 이상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조세제도에 개별보상관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들의 조세부담감은 없어지지 않으며 조세회피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상 세무공무원으로서 매년 지방세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해당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한다. 하지만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중에는 납세자 본인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는 납세자도 있어 납세자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세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실례로 “재산세 1년 새 2배 주민들 반발확산” (2006. 5. 30 동아일보), “1주택자도 보유세 최고 5배.....반발확산”(2007. 3. 16 국민일보), “투기도 안했는데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느냐” 는 불만(2007. 3. 15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을 토로하는 등 일부 납세자

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sup>1)</sup>. 또한 지난 2007년 3월 조세연구원이 전국의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납세자의식과 세정개혁방향 보고서(2007. 3. 2)에 따르면 “우리나라 납세자 68%가 세금을 납부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들을 면담해 본 바에 의하면 재산세의 경우 재산가액이 변동이 없음에도 납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액부담이 많아진 점 등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것과 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 또한 혼란스럽고 불만이 많았다. 지방세담당 공무원 역시도 행정비용이 과다소요와 납세자들의 항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납세자본인이 다른 납세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조세제도에 있어서 납세의식고취와 함께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고 납세자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징수 및 운용적인 측면에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동의는 납세자의 납세의지에 영향을 끼치며, 납세의지는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국가 발전이나 지방 발전

1) 부동산관련보유세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과세기준을 면적에서 시가로 2005년도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9억원 초과, 나대지는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고,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토지분재산세로 변경하여 관할 지방자치내에서만 합산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의 50%로 하여 과세하고 2006년에는 55%, 2007년도 60%, 2008년도 65%, 매년5%씩 인상하여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을 위한 정책비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의 납세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조세회피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조세회피와 반대의 개념인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세회피 연구에서 규명된 요인을 활용하여 실험연구 및 실제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조세회피와 관련한 연구로는 Spicer and Lundstedt(1976)는 조세회피요인으로 제재의 정도와 행정능력, 재정불공정, 사회적 규범 등의 세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세저항률은 탈세 자체보다는 탈세를 하려는 상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조세포탈지수란 납세자가 어느 정도 탈세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불공정지수는 재정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것이다. 불공정지수 및 납세자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탈세행위자의 수가 조세포탈과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태영(1990)은 소득수준, 세율, 정부신뢰의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과 납세자의 반응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고, 조정환(1996)은 환경과 상황적 요인 및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춘래와 최평윤(1997)은 조세회피성향과 납세자 특성요인간의 관계를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Allingham and Sandmo (1972)의 이론연구에서 출발하여 급속히 발전돼 왔으며, 실증연구도 국세청의 실제자료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벌위주의 세무정책에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Alm, 1991)와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유인위주의 세무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Falkinger and Walther, 1991)가 있으며, 납세자의 도덕성과 조세문화가 납세순응에 유의적이라는 연구(Torgler, 2004)와 세율과 납세순응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은 낮아진다는 연구(현진권 등, 2002),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조세제도가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각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조세제도의 복잡성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연구(심석무, 2004), 처벌과 유인정책의 조화가 납세순응에 효과적임을 주장한 연구(이명곤 등, 2005), 한국 납세자와 일본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분석한 연구(현진권, 2005) 등이 있다.

납세자의 납세순응에는 정치·문화·사회적 여건에 따라 조세부담·세법복잡

성·적발확률·정부혜택·조세공평성 등의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세윤리나 세법지식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지방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의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도 말 지방세체납액이 3조2천억원 이상이며 이는 지방재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체납건수가 4천2백만건 이상으로 지방세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체납을 줄이고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부경험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납세의식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지방세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로 하여금 조세순응을 갖게 함에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 영향요인과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 인식의 차이와 불성실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 통계학적특성에 따라 납세의식영향요인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셋째,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방세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문헌에 의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문헌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논문,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의 국내



외 문헌을 중심으로 납세의식의 개념과 영향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설정된 연구목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된 납세의식 영향요인의 측정 변수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에 대한 강도인식, 지방세행정서비스만족도 및 납세의지에 대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통계적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표본인 전국에 거주하는 직장인 위주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설문지를 배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강원, 제주 등 10개 지역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 납부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10월 2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약5개월에 걸쳐 우편발송 및 직접조사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통계적 분석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제안된 이론적 연구모형과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의식 영향요인과 납세의지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체납경험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사회경제학적인 특성 등의 납세의식의 인식정도의 차이를 ANOVA분석을 이용하였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 연구방법 및 구성을,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로서 납세의식 개념에서 납세순응과 조세회피 및 지방세체납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의 조세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리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설계에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 영향요인과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가설 설정, 설문지구성을 정리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표본의 특성, 납세의식 영향요인과 납세의지와 상관관계 분석·다중회귀분석, 분석결과 및 논의와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과 정책적 제의,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 제1절 납세의식의 개념과 지방세 체납

#### 1. 납세의식의 개념

납세자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단히 복잡하고 행동결정요인 또한 많다. 납세자의 조세회피 문제는 조세제도가 발생하면서부터 있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조세회피 현상이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이므로 회계학, 경제학, 재정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다.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나의 시각에서 평면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들은 몇 가지의 요인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세분하여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조세회피(tax evasion)는 "납세의무를 이행 하지 못한 상태"이며 납세의무의 이행(tax compliance)이란 "국세청의 개입 없이 납세자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sup>2)</sup>이라 정의할 수 있다. 납세의식은 크게 조세회피(tax evasion)와 조세순응(tax compliance)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세무회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탈세를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있는 반면, 납세순응에 관한 연구는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순기능적인 정책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회피와 납세순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면에서 고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순응과 조세회피의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

2) Internal Revenue Service, Estimates of In comes Unreported on Individual Tax Returns, Washington, D.C. : USGPO, September 1979.



### (1) 납세순응의 이론적 검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동기 중 가장 초기의 단계가 순응(compliance)의 단계이다. 순응의 단계를 조세납부와 결부시키면 납세순응의 개념이 과생되고 납세순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조세회피라고 할 수 있다.

조세정책에서 탈세문제가 가장 심각한 정책과제로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다. 서무당국에서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탈세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탈세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이 뒷받침 되어야 효과적인 탈세방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순응의 정의에 대하여 ‘국세청의 강력한 노력 없이 정확하고 적기에 완전히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비율은 신고 납부된 세금총액을 감사에 의해 수정된 납부할 세금총액으로 나누어 계산된다고 하였다. Fisher et al.(1992)은 세무신고 요구에 대한 순응이라 함은 ‘납세자가 모든 과세소득을 적시에 신고하고 신고시점의 적용 가능한 세법의 규정과 시행규칙 및 판례에 따라 정확한 세액을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납세순응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납세순응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찾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과 납세순응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실험자료(experimental data)를 이용하는 것이다. 실험 자료를 사용한 접근법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이었기 때문에 납세순응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납세자 중심의 접근방법도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납세순응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Allingham and Sandmo(1972)의 이론연구에서 출발하여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실증연구도 국세청의 실제자료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처벌위주의 세무정책에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는 견해(Alm, 1991)와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유인위주의 세무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이라는 견해(Falkinger and Walther, 1991)가 있으며, 납세자의 도덕성과 조세문화가 납세순응에 유의적이라는 연구(Torgler, 2004) 등이 있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납세순응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무당국의 조사받을 확률에 대하여 세전소득과 세후 기대소득을 경제학적 함수관계로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적발확률, 제재수준 등의 영향을 받아 신고소득이 증가되면 조세회피는 감소되고, 세율이 변화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나 이들의 관계를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Spicer and Lundstedt(1976)는 납세자들은 집단 내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Witte and Woodbury(1985)는 납세순응에 대한 제재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높은 성실납세 이행율과 관련이 있고, 형사상의 사기에 대한 금고선고의 엄격성과 적발의 염려는 일반적으로 성실 납세이행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납세순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종환(1995)은 조세제도의 공평성인식과 납세성실성(tax compliance)에 대한 조세지식의 영향을 측정하고 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식변화를 통하여 납세순응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세지식의 유무는 추가적인 현금소득을 보고하고 소득공제 과대계상을 줄이는 측면에서 납세성실성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세지식의 유무는 공평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성실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공평성 인식의 증가는 일반납세자의 성실성수준을 증가시키며, 과대 소득공제를 줄임으로써 응답자 자신의 성실성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목(2000)은 납세순응(tax compliance)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을 하였다. 납세순응(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세 부담 공평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독립변수의 요

인별 분석에서는 납세태도에 대한 요인은 부가가치세제의 결함이 낮은 집단을 제외한 전체표본(부가가치세제 결함이 높은 집단, 납세도의 의식이 낮은 집단,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세 부담 공평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 외에도 세율과 납세순응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은 낮아진다는 연구(현진권 등, 2002),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조세제도가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각 계층별로 차이가 있고, 조세제도의 복잡성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연구(심석무, 2004), 처벌과 유인정책의 조화가 납세순응에 효과적임을 주장한 연구(이명곤 등, 2005), 한국 납세자와 일본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를 분석한 연구(현진권, 2005)가 있다.

## (2) 조세회피의 이론적 검토

조세회피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 조세회피란 광의로 해석할 때 납세순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조세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절세와 탈세(tax evasion)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홍정화와 김완희, 1997). 조세회피를 협의로 해석할 때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의 탈세와 적법행위로서의 절세의 중간에 해당된다. 절세는 조세기능의 사회·경제정책적인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과세특례 및 각종 공제제도나 일정한 기준을 갖춘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필요경비인정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대하여 독일의 조세법학자 Kaus Tipke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비록 세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방법으로 법규정을 해석하면 법의 규정과 충돌함이 없이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고, 미국의 Bittker교수는 ‘범죄 아닌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조세회피라고 할 때 애매모호한 성문법 규정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나 만약에 대중적인 주목을 끌 정도가 되면 아마도 봉쇄될 것이 틀림없는 입법상 부주의로 인한 법의 흠결(shortage)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성공한 거래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세포탈에는 은닉(concealment), 장부과손 등의 부정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조세포탈은 형법상의 범죄유형에 해당되며 이를 처벌하려면 조세 면탈행위가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탈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위법적 행위이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여 조세의 포탈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세회피는 비합법적인 탈세와 비교하여 합법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이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절세와는 합법적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세법개념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법의 흠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무에서는 협의의 조세회피개념보다는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여 탈세는 허용될 수 없으나 절세는 기업의 노하우로 중요시되고 있다.

Spicer and Lundstedt(1976)는 조세회피요인으로 제재의 정도와 행정능력, 재정불공정, 사회적 규범 등의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조세저항률은 탈세 자체보다는 탈세를 하려는 상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조세포탈지수란 납세자가 어느 정도 탈세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불공정지수는 재정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불공정지수 및 납세자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탈세 행위자의 수가 조세포탈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납세자가 세법을 위반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직접질문을 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에 알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으며, 세법은 지켜져야 하지만 조세회피행위 그 자체는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납세자가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을 과대 계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조세체계가 공평하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Benjamini and Maital(1985)은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받고, 조세회피가 널리 확산되면 자신의 조세회피성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Kaplan and Reckers(1985)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의도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한 조세회피 정도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Kaplan et al.(1988)은 납세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세회피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회피를 정당화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다고 분석하였다. Spicer(1986)는 심리원가는 납세자의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사회공동체의 식, 납세자에 대한 도의적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와 함수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조세회피와 관련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조세회피요인을 찾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홍정화와 김완희(1997)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탈세수단의 선택과 관련한 특성을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성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에 대한 인지도이며, 총수입금액이 높을수록,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탈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특성이 탈세수단의 선택과정에서 탈세수단 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에 대한 인지정도, 조세규정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정도는 총수입금액의 과소보고수단 선택가능성과 정(+)의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전태영(1990)은 소득수준, 세율, 정부신뢰의 요인들이 조세회피성향과 납세자의 반응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고, 조정환(1996)은 환경과 상황적 요인 및 납세윤리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박춘래와 최평운(1997)은 조세회피성향과 납세자 특성요인간의 관계를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 2. 지방세체납

### (1) 지방세체납의 의의와 시도별 지방세체납현황

지방세체납의 개념을 살펴보면 체납은 조세회피의 일종이지만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납세기피 유형인 조세회피와 탈세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체납이라고 한다(한국지방세연구회

2002). 또한 지방세법에서 보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체납이라 한다. 실정법상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으로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경우는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제도 국세와 같이 위 용어의 개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006년도 지방세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총3조2천억이 체납되었으며 서울이 7천8백억, 경기도가 8천5백억, 부산이 2천1백억, 경남이 2천억, 인천이 1천7백억, 경북이 1천5백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서울과 경기도가 전체체납액의 50%를 넘고 있다. 2006년도 시·도별 체납현황을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2006년도 시·도별지방세 징수율과 체납 현황

(단위 : 10억원)

구분	조정액	징수액	징수율	결손액	결손율	체납액	체납율
계	45,352	41,294	91.1	794	1.8	3,263	7.2
서울	12,377	11,306	91.4	284	2.3	786	6.4
부산	2,843	2,579	90.7	48	1.7	216	7.6
대구	1,810	1,660	91.7	11	0.6	139	7.7
인천	2,224	1,945	87.5	105	4.7	174	7.8
광주	1,029	886	86	24	2.3	120	11.6
대전	1,166	1,081	92.7	13	1.1	73	6.2
울산	1,038	943	90.9	7	0.7	87	8.4
경기	11,745	10,721	91.3	164	1.4	859	7.3
강원	1,170	1,055	90.2	14	1.2	101	8.6
충북	1,116	1,041	93.3	16	1.4	59	5.3
충남	1,694	1,551	91.6	28	1.6	115	6.8
전북	1,003	915	91.3	17	1.7	70	7
전남	1,146	1,061	92.5	14	1.2	72	6.2
경북	1,977	1,800	91	20	1	157	8
경남	2,546	2,317	91	25	1	205	8.1
제주	467	434	92.8	4	0.8	30	6.4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4천2백만 건에 3조2천억이라는 지방세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비용도 소요되고 있다. 이는 성실납세자와의 징세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지방세체납 사유별현황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을 시·도별 사유를 분석하여 국회에 제출한 행정자치부자료를 보면 4천2백만건의 체납액 중 고질체납자의 경우도 1천1백만 건에 9천2백억에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송·재산압류된 경우가 1천4백만건에 1조1천억이 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전체 징수액의 8%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방세체납사유별 현황을 <표 2-2>에 나타내었다.

<표 2-2> 2006년도 지방세체납 사유별현황

(단위 : 천건, 10억원)

구분	전 체 체납현황		체납 사유별 분류											
			징수유예		행불		무재산		고질체납		소송, 재산압류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2,538	3,222	28	7	4,357	275	8,383	589	11,574	928	14,071	1,187	3,468	216
서울	5,833	786	0	1	299	30	847	72	995	257	3,177	397	516	28
부산	3,617	175	.	.	405	10	466	21	548	21	1,999	116	198	7
대구	2,482	139	.	.	288	16	311	16	602	33	1,281	74	.	.
인천	3,272	174	.	.	280	15	647	34	0	17	1,688	88	0	0
광주	2,379	120	.	.	338	9	570	18	340	13	1,096	75	35	4
대전	1,108	73	.	.	143	8	178	14	787	51	0	0	.	.
울산	1,015	87	15	2	133	11	224	21	234	21	331	29	78	4
경기	10,281	895	6	3	1,140	88	3,251	266	3,715	286	1,347	158	822	59
강원	1,070	101	0	1	100	10	123	15	387	24	321	41	138	0
충북	1,169	59	3	0	129	6	236	10	404	16	243	21	154	6
충남	1,955	115	0	1	158	8	209	13	555	31	803	50	230	13
전북	1,759	70	1	0	133	6	431	19	1,194	45	0	0	.	.
전남	1,484	72	2	0	102	4	55	3	499	21	234	13	592	31
경북	2,422	157	0	0	228	15	245	19	650	38	877	58	421	26
경남	2,440	205	0	0	445	35	569	47	633	51	513	47	279	25
제주	253	30	0	0	37	4	20	2	31	3	161	20	4	1



지방세체납사유의 경우 무재산자와 행불자의 경우도 8천6백40억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징수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8천억이 넘는 지방세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체납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의 자료의 경우도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서 요구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정리 한 것이다.

### (3) 지방세 결손처분의 의의 및 결손처분 현황

결손처분이라 함은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존재로 인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경우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스스로 지방세 징수절차를 중지 및 유보하거나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을 확인하는 처분을 말한다. 즉 결손처분은 과세권자가 당해 조세채권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체를 원초적으로 소멸시키는 창설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효의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이라면 추상적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것을 확인·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한국지방세연구회 2007)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자료를 보면 480만건에 7천8백억원의 결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중 무재산자가 220만건에 4천8백억원이고 서울, 경기도가 4천4백억원으로 57%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표 2-3>에 정리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은 과세권자의 징수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매년 7천억에 이르는 지방세를 결손 처분하는 것은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인천의 경우는 2006년도 전체 지방세 징수액의 5%에 달하는 1천억원을 결손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3> 2006년도 지방세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건, 10억원)

구분	전체결손 처분 현황		결손처분 사유별 분류									
			무재산		행 불		소멸시효 완성		채납처분 종결, 중지		기 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872	784	2,218	490	283	31	1,105	53	173	36	1,093	174
서울	2,045	284	966	153	113	11	104	6	100	10	760	103
부산	298	38	108	22	6	2	124	5	16	3	44	7
대구	96	11	30	7	1	0	57	2	4	1	3	1
인천	764	105	351	49	19	1	176	6	·	·	218	49
광주	100	24	47	22	·	·	53	2	·	·	·	·
대전	81	13	62	11	7	1	8	0	·	·	4	1
울산	52	7	12	4	0	0	38	2	·	·	2	1
경기	611	164	299	131	34	8	232	15	23	8	23	3
강원	67	14	16	7	6	1	38	3	2	2	5	1
충북	102	16	62	11	4	0	25	1	10	3	2	1
충남	138	28	63	20	27	1	36	1	2	2	10	3
전북	125	17	92	13	1	0	19	0	3	2	10	1
전남	106	14	39	10	24	1	34	1	4	1	4	1
경북	151	20	30	10	29	1	81	5	2	1	7	4
경남	97	25	28	17	6	2	61	4	2	1	1	0
제주	39	4	10	2	5	0	20	0	4	1	·	·

## 제2절 납세의식 영향요인연구의 접근방법과 선행연구

### 1. 납세의식 영향요인 연구의 접근방법

납세의식 영향요인의 이론적 접근방법을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순수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순수경제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의식을 조세부담, 적발확률, 벌금구조의 함수로

보고 있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의식을 설명하는데 조세제도의 공정성, 동료집단의 조세회피수준, 사회공동체의식, 조세윤리 등과 같이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도입하고 있다.

### (1) 순수경제학적 접근방법

순수경제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가 가능하다면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인, 동일조건 하에서라면 자신의 효용이 극대화하는 행동을 취하려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납세행동을 세율, 적발확률, 벌금률(가산세율)의 함수로 보고 있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실제대로 모두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은 가처분소득의 기대효용 극대화를 전제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가정과 함수식을 이용하여 세율의 변화와 신고소득과의 관계, 벌금률과 신고소득, 적발확률과 신고소득과의 관계를 분석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계획적인 과소신고로 어느 정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당국의 조사가 없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면 보다 나은 선택이 될 것이나 세무조사를 받아 가산세를 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금전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적발확률과 신고소득, 벌금률과 신고소득과의 관계는 적발확률과 벌금률이 각각 증가되면, 신고소득의 수준이 증가되어 조세회피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세율의 변화가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결합되어 나타나 이들의 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순수경제학적 분석모형은 경제적 요인을 밝혀주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수학적 모형에 입각한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고 모형을 단순화하여 현실적인 조세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은 조세회피의 의사결정을 납세자가 기대효용이나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구하여 최적신고수준을 분석하여 납세순응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으나 소득금액, 세율, 벌금률, 적발확률 등의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순수경제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행동이 순전히 경제적 동기에서만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규범 등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Benjamini and Maital(1985)는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자신의 조세회피성향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납세자들의 의사결정이 다른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순수경제학적 모형을 발전시켜 경제적 요인과 중앙집권적 또는 지방정치제도를 함수로 표현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표적 연구로 Vogel(1974)은 교육수준이 높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한다고 분석하였고, Spicer and Becker(1980)는 실험실 방법을 사용하여 조세회피로 인한 추가적 소득의 효용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재정의 공평성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회피가 감소한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McCaleb(1976)는 납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분석하면서 가산세율을 높이면 성실 납세를 유도하여 조세회피행위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Koskela(1983)는 누진적이거나 비례적인 조세함수들을 고려함으로써 가산세가 조세회피행위를 억제시킨다는 결론의 연구발표를 하였다.

Witte and Woodbury(1985)는 교육수준이 높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세청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순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 집단에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 (2)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납세자의 의식구조와 동기 등을 파악함으로써 납세순응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세회피는 조세제도의 불공평으로부터 비롯되고 불공평하다는 것은 높은 세율, 예산낭비, 정부의 비능률성, 세금에 대한 반대급부의 미약 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방법은 납세순응을 가치·태도·인구통계적 특성(연령, 직업, 신분, 학력 등)의 함수로 표현하여 사회조사를 통한 경험적 실증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납세순응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인과관계의

과약이 다른 방법보다 더욱 용이하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Spicer and Lundstedt(1976)는 납세자의 교육과 조세윤리 수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강제요소와 내재된 규범 그리고 교환요소로 보았다. 납세자가 집단 내에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특히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결국 납세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심리학적 이론이다.

Spicer(1986)는 조세회피의 인과관계를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인 심리원가(psychic cost)의 개념을 도입하여 납세행동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에서 조세시스템에 대한 만족의 결정변수는 이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의 거래조건에 관한 공평성의 인식정도이다. 거래조건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참여자들은 그들의 투입량을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불공평의 정도를 감소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합리적인 납세자는 조세회피로 인한 기대이익이 적발될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과 납세자가 심리적으로 부담하는 심리원가를 합제한 기대손실을 초과하는 때에 조세를 회피한다고 하였다. 심리원가는 납세자의 조세제도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사회공동체의식, 납세자에 대한 도의적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과 함수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의 이론적 접근법은 순수경제학적 접근법과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요인,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요인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도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도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인구통계적 요인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따르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 2. 제도적 요인과 선행연구

### 1) 개인적 요인

납세자인 인간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되고 법과 제도는 인간을



위해 개선되어 가면서 상호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납세자는 조세제도에 불만이 있으면 조세회피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납세의 공평성을 추구할 것이고, 조세부담이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공평성의 원칙에 충실하면 납세자는 납세순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납세의식은 조세회피 현상과 같은 개인적 요인 보다는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같은 제도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제도적 요인은 조세체계 그 자체로서 조세체계 내부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변수들로 구성되고, 제도적 요인의 변화는 납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순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ackson and Milliron(1986)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요인, 대응변수, 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15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제도적 요인으로 조세복잡성, 세무당국과의 유대, 조세부담(세율), 재제 규정, 적발확률로 분류하였다. 최근주(2003)는 세제의 공평성, 세법의 복잡성, 세율의 적정성, 정부지출의 신뢰성,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 조세부담, 세법 복잡성, 적발확률, 정부혜택, 조세공평성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다.

#### (1) 조세부담

조세부담(tax burden)은 객관적 조세부담과 주관적 조세부담이 있는데 납세자들이 느끼는 조세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세부담과 납세순응과의 관계는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지만 연구모형과 가설, 사용된 표본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부담은 세율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세율의 수준에 따라서 납세순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론연구와 실증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Allingham and Sandmo(1972), Yitzhaki(1974)는 세율이 조세화 되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Alm et al.(1990)은 세율을 포함한 조세구조가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 Alm et al.(1992)은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박창균과 현진권(2002)의 연구는 세율은 납세순응에 음(-)의 영향을 주어서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낮아지는 결과로 분석되었다.

#### (2) 세법복잡성

세법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조세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세법복잡성이 납세의식

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서 인식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세법복잡성에 대한 문제로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로 세법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것과 둘째로 많은 계산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세법이 복잡하거나 모호할수록 납세자들은 이를 조세회피의 기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Milliron(1985)은 4가지 차원에서 세법의 복잡성을 정의하고 주제의 성격(nature of the topic), 표현량(quantitiveness of the presentation), 법 악용의 취약성(vulnerability of the law to misuse), 문장의 용이성(readability of the passage)을 들었다.

Vogel(1974)은 조세회피와 세법복잡성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Clotfelter(1983)는 세법복잡성은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홍정화와 김완희(1997)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세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세회피수단이 비용의 증가로 인해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수단의 이용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였다.

### (3) 적발확률

적발확률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내용을 발견하고 과소납부된 세금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순응적인 납세자들 보다는 조세회피적인 납세자가 적발확률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적발확률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확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왔고 적발확률은 조세회피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Warneryd and Walerud(1982)는 조세회피와 적발확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으며, Mason and Calvin(1984)에 의하면 조세회피와 가장 강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체포확률이 아니라 적발확률에 대한 신념이라고 분석하였다.

### (4) 정부혜택

정부혜택은 세금납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혜택을 말하며 정부나 조세당국의 신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불필요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공평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신뢰정도를 말한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미 국세청이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징수능력을 신뢰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고, Spicer and Becker(1980)는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한 납세자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불공평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두 연구의 결과에서 납세순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현진권(2002) 등은 정책수단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정책수단이 납세순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이 납세순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난다.

#### (5) 조세공평성

납세자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납세순응과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조세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고,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과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수평적 공평성은 이상적인 세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Musgrave(1959)는 수평적 공평성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납세자들은 동등하게 취급해야한다.(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고 정의했다. 이는 경제적으로 동등한 상황(equal economic situation)에 있다면 같은 세액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지급능력(equal ability to pay)을 갖는 사람들은 균등한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직적 공평성은 더 큰 부담능력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조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필우(1997)는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조건이 상이하다면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어 상이한 세액이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급능력이 다르면 차별적 조세부담이 배분된다는 것이다”로 정의하였다. 수직적 공평성은 조세체계가 누진적(progressive)인가 아니면 역진적(regressive)인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조세체계가 누진적이면 수직적 공평성이 달성된다고 보았다(전규안, 1997)

Spicer and Becker(1980)의 실험연구에서는 불공평한 조세제도의 희생자라고 느낄 때 조세회피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ason and Caivin

(1984)의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공평성과 납세순응 간에는 어떤 중요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조정환(1996)의 연구에서도 조세공평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조세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납세순응이나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방법론이나 연구시기 등에서 일치된 연구결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제도적 요인을 납세의식에 미치는 중요변수로 분석한 연구는 Allingham and Sandmo(1972), Witte and Woodbury(1985), Rice(1992)를 꼽을 수 있고, 국내의 연구는 전태영(1990), 박주철과 이남우(2003), 현진권(2002) 등, 심석무(2004)의 연구가 있다.

Allingham and Sandmo(1972)는 세율 변화와 신고소득과의 관계, 벌금률과 신고소득과의 관계, 적발확률과 신고소득과의 관계를 분석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가처분소득의 기대효용 극대화를 전제하여 기대효용 함수로 표시하였다.

납세자는 소득을 신고할 때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는 소득 전부를 신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소득의 일부만을 신고하는 것이다. 적발확률과 신고소득, 벌금률과 신고소득과의 관계는 적발확률과 벌금률이 각각 증가하면 신고소득의 수준이 증가되어 조세회피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세율의 변화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분석하였다.

Witte and Woodvury(1985)는 납세순응(tax compliance)에 대한 제재변수들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970년 미국국세청(IRS)에 제출된 조세신고서 자료를 이용하였고 연구결과는 첫째, 높은 세무조사 확률은 높은 성실납세 이행율과 관련이 있고, 적발의 염려는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켰으며, 성실납세 이행율은 소득에 따라 매년 약 \$30,000의 소득까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된 조세회피와 계획하지 않은 조세회피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여 결과해석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ice(1992)는 법인의 납세의무 준수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의 납세의무 준수행태를 분석하였다. 법인의 납세의무 불이행과 한계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지만 정(+)<sup>1</sup>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익성과가 낮은 기업은 세금공제후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탈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익성과가 높은 기업은 과세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이익을 과소 보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기 때문에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홍정화와 김완희(1997)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탈세수단의 선택과 관련한 특성을 자영업자의 소득세 탈세성향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탈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에 대한 인지도이고 총수입금액이 높을수록,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탈세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동료집단의 탈세성향에 대한 인지도, 조세규정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도는 총수입금액의 과소보고수단 선택가능성과 정(+)<sup>1</sup>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소득수준과 원천징수소득비율은 소득공제과대보고수단 선택가능성과 정(+)<sup>1</sup>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2002) 등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실험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간의 조합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율과 납세순응은 음(-)<sup>1</sup>의 관계를 가져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은 낮아지고 가산세율과 납세순응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산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순응이 높아진다. 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납세순응과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험상의 제약으로 인해 가산세율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수단들의 납세순응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정책수단이 납세순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이 납세순응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현진권(2005)의 또 다른 연구는 세무조사와 가산세가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가산세율이 일본에 비해 낮고 조세정보 공개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에 비해 매우 폐쇄적이며, 한국의 납세순응수준은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어 조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제시하였다.

박주철과 이남우(2003)는 납세자들의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들을 실험대상으로 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변화에 대한 신고소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직무소득 실험상황의 경우 세율이 높은 집단은 유의적이고 세율과 신고소득의 관계는 정(+)<sup>1</sup>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유형 효과와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유형이 직무소득에 해당할 경우 세율이 인상되면 신고소득 수준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석무(2004)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 세율, 양식의 복잡성, 적발확률, 세무당국의 간섭 등을 선정하여 납세순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냐 동기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세율과 조세제도의 복잡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세제도의 운용과 세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조세제도의 인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세제도와 납세순응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세법의 단순화, 세무대리인의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황이규(2005)는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에서 조세 제도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개인사업자는 세무조사에 의한 적발확률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개인사업자는 우리 사회에 조세회피가 만연되어 있다고 인식할수록 조세 회피성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집단에 비해 높은 조세회피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넷째, 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연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요약

연구자	요인	종속변수	연구결과
Allingham/Sandmo (1972)	세율 적발확률	신고소득 납세순응	벌금률과 신고소득은 적발확률과 벌금률이 증가하면 조세회피는 감소되고 세율의 변화가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Witte/Woodbury (1985)	제재 소득수준 적발확률	성실납세	높은 적발확률은 성실납세 이행율과 관련이 있고 성실 납세이행을 증가시켰다. 적발의 염려는 성실납세 이행을 증가시키고 성실납세 이행률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ice (1992)	세율 적발확률	납세의무 불이행	이익성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적발확률이 납세의무불이행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홍정화/ 김완희 (1997)	조세윤리 세법복잡성 조세공정성 적발확률	탈세성향 탈세수단	소득수준과 탈세성향이 높을수록 탈세성향이 높고, 연령, 동료집단의 탈세성향, 조세규정의 복잡성에 대한 인지도는 총수입금액의 과소보고수단 선택가능성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박주철/ 이남우 (2003)	세율 가산세	신고소득	세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소득신고액이 세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소득신고액보다 유의적이고, 소득유형효과와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진권등 (2002)	조세제도 처벌위주 정책	납세순응	세율과 납세순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가산세율은 납세순응도와, 세무조사 선정비율과 납세순응도와는 양(+)의 관계를 가졌다.
심석무 (2005)	세율 세법복잡성 적발확률	납세순응	소득수준과 조세제도가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각 계층별로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세제도의 복잡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자료들을 활용하여 부동산관련 지방세불성실납세자, 즉 체납경험이 있는 자들이 납세의식영향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도적 요인에서 세법복잡성에서 지방세복잡성, 적발확률을 체납처분강도인식, 정부혜택을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세공평성을 지방세공평성인식으로 영향요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 3. 개인적 요인과 선행연구

#### 1) 개인적 요인

납세순응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납세순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개인적 요인은 납세순응을 분석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의식구조나 납세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납세순응은 개인적인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고, 개인의 세법지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납세순응이 영향을 받게 된다(정재을, 2003)

Jackson and Milliron(1986)은 납세순응에 미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 변수, 대응 변수, 태도 및 인지요인(개인적 요인), 제도적 구조요인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15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개인적 요인으로 윤리, 제도에 대한 공정성, 동료에 대한 영향으로 분류하였다. Witte and Woodbury(1985), 이종환(1995)은 세법지식의 수준을, 정재을(2004)은 도덕발달 수준을, 김동은(2003)은 조세윤리를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세윤리와 세법지식이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행동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적요인들 중 선행연구에서 납세의식영향요인인 조세윤리와 세법지식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 (1) 조세윤리

납세자의 윤리의식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조세윤리는 납세자와 정부의 관계에서 시민행동에 대한 규범으로 납세자가 느끼는 사회의 전반적인 조세윤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극히 적은 금액의 조세회피나 납세순응에 대한 질문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세법 등의 규정을 납세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면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변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납세자들이 많다고 한다. 윤리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원칙이나 도덕적 가치이며, 납세윤리란 정부와의 관계에서 납세자로서의 시민

행동의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ong and Yarbrough, 1978)

Spicer and Lundstedt(1976)는 제재의 정도와 행정능력, 재정불공정, 사회적 규범 등의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조세저항률은 탈세 자체보다는 탈세를 하려는 상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조세포탈지수란 납세자가 어느 정도 탈세를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불공정지수는 재정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불공정지수 및 납세자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탈세행위자의 수가 조세포탈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son and Calvin(1978)에 의하면 조세윤리는 납세순응도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고, Kaplan and Reckers(1985)는 조세회피성향에는 조세회피의 결과, 도덕적 특성, 윤리, 조세회피율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Torgler(2004)는 납세자의 도덕성과 조세문화가 납세순응에 유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연구로는 전태영(1990)은 조세윤리가 조세회피정도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하였고, 정재을(2004)은 도덕발달(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세자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국세청에 의한 강압적인 의사전달(입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2) 세법지식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은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납세순응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법지식 수준은 세법이나 세무에 관한 지식수준과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세법지식 수준이 낮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얻기 위한 반대급부라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Lewis, 1979). 납세자의 조세행동에 대해 지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itte and Woodbury(1985)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에게

는 오히려 조세를 회피하는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결혼한 사람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독신생활자와 전세입주자보다 조세윤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전한 조세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납세자가 거의 없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소외감과 불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조세윤리 수준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이종환(1995)은 조세지식의 유무는 납세성실성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세지식의 유무가 납세성실성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공평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납세자의 납세성실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방법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도 필요하며, 이는 수요자의 세무행정 대한 만족감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납세순응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서 개인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 연구는 Spicer and Lundstedt(1976), Song and Yarbrough(1978), Kaplan and Reckers(1985) 등의 연구가 있고, 국내의 연구로는 이종환(1995), 박병목(2000), 김동은(2003), 정재을(2004) 등의 연구가 있다.

Spicer(1986)는 납세순응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경제적요인이나 제도적인 요인 외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인 심리원가(psychic cost), 또는 개인적인 특성요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Spicer and Lundstedt(1976)는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제재의 정도와 행정능력, 재정불공정, 사회적 규범 등의 네 가지 요인이 납세자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적발확률에 대한 인식과 조세저항률은 부(-)의 관계가 있고, 조세포탈지수와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부(-)의 상관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경험과 조세저항 사이에는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조세저항은 부(-)의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Srinivasan(1973)의 이론적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조세윤리수준을 작성하고 조세회피와 조세윤리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세회피를 범죄로 간주하였지만, 당국에 조세회피자들을 신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납세의무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적발확률이 가장 중요하였다. 결혼한 사람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건전한 조세윤리의식이 있었고, 소외감과 불신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조세윤리수준이 낮았다.

Kaplan and Reckers(1985)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성향과 회피에 대한 적절한 벌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요소들의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벌금과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벌금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재무적 요구, 소득수준, 윤리, 조세회피율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세회피성향에는 윤리, 조세회피율만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환(1995)은 공평성인식과 납세성실성에 대한 조세지식의 영향을 측정하고 납세자들의 공평성 인식변화를 통하여 납세순응의 인식변화를 측정하였다. 조세지식의 유무는 납세성실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평성 인식정도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납세자의 성실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조세에 대한 교육과정은 조세제도에 대한 공평성 인식을 증가시키며, 조세에 대한 공평성 인식변화는 납세성실성의 인식변화를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

박병목(2000)은 납세도의(tax compliance)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으로 설명하였다.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을 제외한 전체표본이 조세부담 공평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각 요인별 분석에서는 납세태도에 대한 요인은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세제 인지도 요인에서는 전체표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재을(2004)은 납세자의 개인적 특성인 도덕발달수준과 통제원천이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통제내재론자와 외지론자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는 도덕발달(윤리수준)과 통제원천(성격변수)은 납

세자들의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세청에 의한 강압적인 의사전달(입장표명)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요약하면 <표 2-5>과 같다.

<표 2-5> 개인적 요인의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요 인	종속변수	연 구 내 용
Spicer/ lundstedt (1976)	조세저항률 조세포탈 윤리지수	조세포탈 지수	불공정지수 및 납세자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탈세행위자의 지수가 조세포탈과 정(+)의 관계로, 적발확률과 조세저항률은 부(-)의 상관이 있었으나, 조세포탈지수와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었다.
Song/ Yarbrough (1978)	조세윤리	조세회피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적발확률이 가장 중요하고,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전한 조세윤리의식이 있었다.
Kaplan/ Reckers (1985)	조세윤리 조세회피율 공평성	조세 회피성향	벌금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재무적 요구, 소득수준, 윤리, 조세회피율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세회피성향에는 윤리, 조세회피율만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종환 (1995)	조세지식	공평성 납세순응	조세지식의 유무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인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납세성실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목 (2000)	납세도의 조세윤리	조세공평성 인식	납세도의의 의식수준이 세 부담의 공평성인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도의의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재을 (2004)	윤리수준 통제원천	양도소득 신고수준	윤리수준과 통제원천은 양도소득 신고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강압적인 의사전달은 도덕발달수준이 낮은 피험자에게 유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에 있어서 세법지식인 지방세이해도를 영향요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 4. 선행연구와의 차이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 실험적 분석모형과 실증적 분석모형을 선정한 뒤에 변수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향을 분석하였다. 즉, 국내의 연구들은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율과,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정부재정의 공정성, 세무행정의 공정성, 세율의 적정성 등을 들었고 국외연구에서도 조세에 대한 인지도와 세법의 공정성, 세제의 공평성에 대한 인지도 등 일반 납세자와 실험실연구를 통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선 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지방세 환경에 맞게 재설계를 하였고, 부동산관련 지방세실체납부경험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부동산관련지방세의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 요인 인식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부동산관련 지방세체납경험자들의 개인특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혼인여부, 연령별, 교육수준 등)과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 납부수준, 부동산보유형태, 재산세 납부시점 등)으로 하여 각 특성별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납세의식 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각 납세자 특성이 독립변수인 납세의식 영향요인별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문제 등을 찾아 사전에 지방세 체납을 차단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1. 연구모형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경험자의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납세의식개념 등 관련 문헌적 접근을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방법과 설문지의 구성을 기술하였다.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납세의식영향요인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세 자체가 지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납세자들의 조세에 관한 납세의식영향 요인의 심리적인 인지정도를 설문지라는 측정도구를 통해서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국세중심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국내에서도 국세에 대하여는 연구가 있으나 지방세의 특정세목을 대상으로 납세의지에 관한 선행 관련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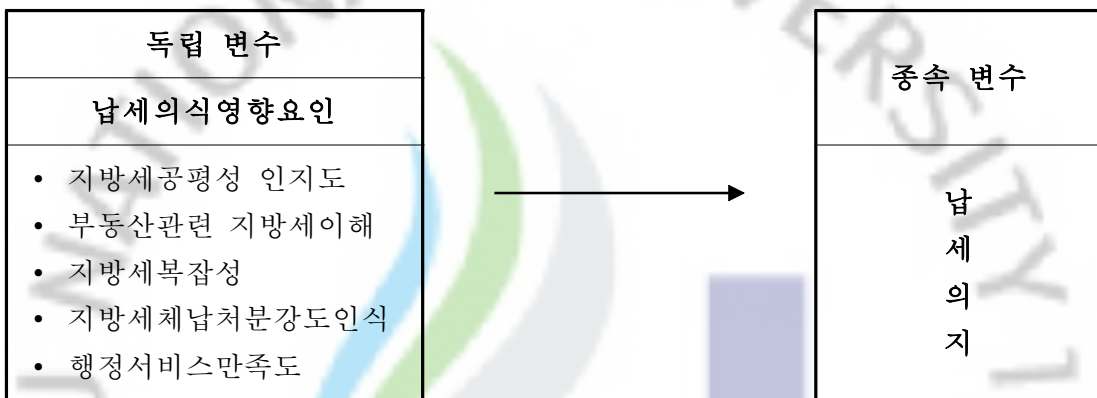
납세의식영향요인의 인지정도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이 속한 문화적 환경과 조세제도,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와 국외에서의 선행 관련연구 결과가 한국의 지방세 조세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납세자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 요인에 대해 행태적 측면을 파악하고자 의도했던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의 납세의지 및 납세의식영향 요인별 관련성 분석으로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조세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지정도와 납세의지를 측정함에 있어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납세의식개념이론을 기초로 선행 관련연구에서 제시된 납세

의식영향 요인 중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 제기 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았고 납세의식영향요인은 부동산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부동산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지방세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의지와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그림3-1>를 설계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의 설계



## 2. 가설 설정

### 1) 부동산관련 지방세공평성 인지도와 납세의지와의 관계

납세자의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납세순응과의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조세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이고,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공평성인식은 현행 지방세 납부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들의 실제 납부하면서 공평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논한다고 할 수 있다.

권영모(1994)에 의하면 조세공평성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세제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변수는 납세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남기원(2001)은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공평성을 느끼지 못하면 성실납세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주(2003)는 동일한 소득수준의 납세자들과의 공평성이 적어지고 조세특례의 적용이 납세자 간에 불균등하게 작용할 경우 납세자는 조세회피를 하려는 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중(2007)은 조세공평성 인식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세회피성향은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도 납세자의 공평성인식은 납세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와 납세의지와 의 관계**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은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납세순응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법지식 수준은 세법이나 세무에 관한 지식수준과 조세회피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Lewis(1979)는 세법지식 수준이 낮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공익을 얻기 위한 반대급부라는 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분석하였다. 납세자의 조세행동에 대해 지식수준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Witte and Woodbury(1985)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세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의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조세를 회피하는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순응을 방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윤말순(2001)은 납세자가 조세지식적 요인이 높을수록 조세회피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고병수(2006)는 조세지식은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면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이해 즉,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방세복잡성과 납세의지와 의 관계**

조세의 복잡성을 정의하려는 연구노력은 두 가지 상이한 방향에서 행하여져 왔다. Million(1985)은 4가지 차원에서 조세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대상으로서 납세자를 이용하는데 주제의 성격과 표현량, 법의 취약성과 문장이 용이성을 들었다. Long과 Swingen(1987)은 조세의 복잡성을 정의하는 대상으로 조세신고서 작성자를 이용하여 세법의 지나친 상세성과 수많은 계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복잡성점수의 86%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지방세제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우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의 과세방법과 주택의 경우에도 시가가 높고 낮음에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Vogel(1974)은 조세회피와 세법복잡성 사이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Westalt(1980)는 세법의 복잡성이 납세자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하여 조세회피를 단념시키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Clotfelter(1983)는 세법복잡성은 조세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우윤(1996)은 세제의 복잡성은 조세회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홍정화와 김완희(1997)는 조세회피와 관련하여 세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할수록 조세회피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기원(2001)은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방법들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문광주(2008)는 세제의 복잡성인지도에 따라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도 지방세복잡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3을 설정하였다.



### 가설3 :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과 납세의지와 의 관계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한다(김의효 2007). 즉, 정당하게 부과된 부동산지방세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매, 급여압류, 형사고발 등 일련의 지방세징수에 대한 강제행위를 말한다.

적발확률은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내용을 발견하고 과소납부된 세금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납세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납세순응적인 납세자들 보다는 조세회피적인 납세자가 적발확률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세무당국이 어느 정도 적발확률이라는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Mason and Calvin(1984)에 의하면 조세회피와 가장 강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체포확률이 아니라 적발확률에 대한 신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채희우(2002)는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금전적인 제재규정이나 비금전적 제재규정과 같은 법적제재규정보다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이나 죄책감 및 명단공개 등과 같은 도덕적인 제재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이규(2004)에 따르면 벌칙의 강화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억지할 수 있다는 방지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법적제재(legal sanctions), 사회적비난(social stigma), 죄책감(guilt theory) 등 세가지 형태의 벌칙을 제시하여 조세회피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고병수(2006)는 적발확률이 크면 조세회피에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과 납세의지와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제재 등이 체납처분강도와 밀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도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4를 설정하여 이를 검정하고자 한다.

**가설4 :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행정서비스만족도와 납세의지와 의 관계**

납세자에 대한 정부혜택은 세금납부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혜택을 말하며 정부나 조세당국의 신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불필요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신뢰정도를 말한다.

안종철(2002)은 조세납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고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Song and Yarbrough(1978)는 미 국세청이 효율적인 조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징수능력을 신뢰할수록 조세회피성향은 줄어든다고 주장하였다.

Spicer and Becker(1980)는 조세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인정한 납세자는 자신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불공평 상태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범(2004)은 정부의 신뢰도는 조세회피성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납세자가 행정서비스를 비롯하여 각종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의 척도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의 경우도 행정서비스의 만족여부에 따라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5를 설정하였다.

**가설5 :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  
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설문지 구성**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 요인별 인식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는 선행관련연구의 설문과 기존 연구결과의 이론적인 부분을 참조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 구성은 각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과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와 납세의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별 변수의 설문구성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들 중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 체납처분 강도에 대한인식, 지방세제공평성인지도, 지방세복잡성인식에 대한 변수를 선정 하였다. <표 3-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독립변수로 ①지방세공평성 인지도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지방세법구조의 공평성, 재산세부과의 공평성, 취득세와 등록세과세표준의 공평성 등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황이규(2004)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②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의 경우는 세법지식을 묻는 것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 재산세부과시 과세표준 결정,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남기원(2001)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③지방세복잡성의 경우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법의 복잡, 재산세 세율구조의 복잡 등을 묻는 것으로 윤말순(2001)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④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가 강력, 행정적불이익 등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묻는 것으로 황이규(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용하였다. ⑤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세편의 노력,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친절 등 행정만족도를 묻는 것으로 하여 5개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안중철(2000)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5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성실납부 여부 등을 묻는 기본문항으로 하여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3-1> 설문지의 각 항목별 분류

구분	납세의식영향요인 현실적 명칭	문항번호
독립변수	1.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3, 11, 17, 25, 28
	2.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1, 6, 7, 15, 18
	3. 지방세복잡성	2, 12, 22, 23, 27
	4.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4, 8, 14, 20, 21
	5. 행정서비스 만족도	5, 9, 10, 19, 26
종속변수	6. 성실납세의지	13, 16, 24, 29

## 2) 일반적인 특성의 설문구성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거주지 등 5개의 문항으로,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부동산보유형태, 부동산 이외의 자산보유실태, 지방세납부시점 등 6개 문항으로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 제2절 변수의 조작적정의

### 1. 납세의식 영향요인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에는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행정서비스만족도를 사용하였다.

#### (1)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공평성인식은 현행지방세 납부의 공정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들의 실제 납부하면서 공평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를 논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이다(권영모, 1994)” 이러한 세계공평성에 대한 인지도변수는 납세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황이규(2002)는 조세공평성관련변수 설문에서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공평성 변수로 보아 연구하였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공평성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재산세의 공평성,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 공평성, 공평한 지방세 납부 등을 사용하여 지방세공평성인지도라 하였다.

#### (2)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면서도 지방세에 대한 이해 즉 지방세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변수이다. 이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관련자들의 납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산세 부과시 기준, 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가 달리 부과 된다는점,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는 사실 등을 알아보고, “세금징수방법이외에도 납세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세시스템에 대한 형평개념 또한 성실납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남기원, 2001)”는 선행연구결과 등을 참고로 이를 부동산지방세제의 이해라 하였다.

### (3) 지방세의 복잡성

지방세구조는 납세자 사이의 조세부담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으로 공평한가의 문제로 조세를 부과하는 방법, 즉 재산(부동산)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등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를 분담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납세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상의 지방세구조를 말한다. 세법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조세순응에 상반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동산지방세제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우만 보더라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가 높고 낮음에 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지나친 세밀성과 복잡한 계산방법들은 성실납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남기원, 2001)”. 이처럼 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한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 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구조의 복잡성,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복잡성, 세율의 복잡성 등으로 하여 지방세복잡성이라 하였다.

### (4)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지방세체납(tax delinquency)은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서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탈세(tax evasion)나 조세회피(tax avoidance)와는 다른 개념이다(김의효, 2002). 국세징수법 제3조는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면 체납에 관한 정의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세나 조세회피가 체납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조세납부의 의무를 피하는 것이지



만, 체납과 달리 세금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기 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크게 구별된다. 조세회피는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는데(김의효, 2002), 여기서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한다 함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법적 행위를 통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정된 부동산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한다.(김의효 2007) 즉, 정당하게 부과된 부동산지방세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압류된 재산의 공매, 급여압류, 형사고발 등 일련의 지방세징수에 대한 강제행위를 말한다. 황이규(2004)는 “벌칙의 강화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억지할 수 있다는 방지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법적제재(legal sanctions), 사회적비난(social stigma), 죄책감(guilt theory) 등 세가지 형태의 벌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강도에 따라 납부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이 강도와 행정적 불이익, 행정규제 등을 체납처분 강도인식이라 하였다.

#### (5)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정부행정이나 지방행정의 행정서비스는 납세 관련자의 납세의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조세납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장에서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는 구매력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다(안중철, 2000).” 납세자들에게 행정서비스는 주민에게 일방적 혜택정도로 인식되어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타인에 비해 공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조세불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조세를 잘 내는 사람이 행정서비스를 비롯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납세의지의 척도로서 중요하며, 납세관련자는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만족도,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만족, 세무상담의 순조로움 등을 행정서비스만족도라 하였다.

## 2. 납세의지

본 연구에서의 성실납세의지라 함은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지방세를 회피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정기분인 재산세인 경우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성실납부의식을 말한다.

## 3. 지방세체납경험자의 개인적 특성

납세자특성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을 사용 하였으며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는 종사분야, 소득수준, 재산세납부수준, 보유동산보유형태, 부동산이외의 자산보유여부 등으로 하였다. 이들 납세자의 특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 등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차적인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중 납세자특성에 대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사분야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다.

### (1) 성별

남성과 여성의 성실 납세도를 시험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보고 있다. Tittle(1980)은 성실납세의식은 생활양식과 세대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Grasmick, Finley와 Glaser(1984)의 연구에 의하면 신세대이며 독립적이며 비전통적인 여성들은 남녀간 성실납세도의 차이를 좁혀준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이일용(1999)은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다고 조사되었다.

### (2) 연령

연령과 성실납세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있다. 연령이 많을수록 성실납세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은 그 원인이 생애주기에 있어서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이일용(1999)은 소유경영자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Clotfelter(1983)의 경우 가장 젊거나 가장 나이 많은

집단이 높은 성실납세도를 보이고 있어 나이와 납세의지 사이에는 직선관계가 아닌 곡선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젊은 층은 단순히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나 혹은 납세기피의 기회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젊은 이들은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CMP(미국세청이 작성한 일정수의 납세자에 대한 광범위한 소득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자료에서 젊은 층의 납세기피자의 비중이 낮게 표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3) 교육수준

납세와 관련한 교육은 재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 일반적인 회계지식과 성실납세에 관련된 지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회계지식은 세금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줌으로써 세금을 부담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탈피하게 해주며 조세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Witte와 Woodbury(1985)는 그들의 조사대상 소득계층 중 일부계층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납세기피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으며, 부정적 효과를 암시하고 있다. 보통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실 납세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 (4) 소득수준

소득수준과 성실납세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및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연구가 있어 결과적으로 일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세율체계가 누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납세의지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용의 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는 많은 세금이 저소득층이 납부하는 적은 세금에 비해서 반드시 효용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저소득층은 사회에 이해관계가 적고 성실납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실납세를 기피함으로써 인하여 그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명예의 손상이나 도덕적 평판의 관점에서 잃을 것이 적고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고 할 때 벌금의 한계효용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납세의지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소득원천을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소득과 원천징수가 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분야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성실납세노력에 의해 성실납세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원천을 성실납세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만, 성실납세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과는 관계는 불명확하다.

#### (5) 종사분야

White와 Woodbury(1985)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5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Westat(1985)의 연구에서는 생산업이나 무역업 종사자들이 높은 납세성실성을 나타내었으며, 전문가, 관리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납세성실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종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영향의 신호(signal)도 명확하지 않다. 800명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Mason과 Calvin(1978)의 연구에서 업종은 조세회피와 부분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Westat(1980)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화이트칼라계층이 공제, 감면 등을 과대계상하여 조세회피를 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이들 집단은 조세회피를 할 기회가 다른 집단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업종(종사분야)은 납세자의 사회경제학적 상황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연구하고 있다.

#### (6) 성실납세자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기한 내 납부한자를 말한다. 즉, 본 연구대상에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 지방세에 대한 체납경험이 없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하였다.

#### (7) 불성실납세자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험이 있는 자. 즉,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체납경험이 있는 자를 불성실납세자로 하였다.

### 제3절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동산 지방세관련 지방세의 납세자의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인식 정도를 검증하여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표본은 전국의 납세자 중 직장인을 위주로 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인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제주 각 200부씩 2007년도 재산세 납부시점인 2007. 10. 25일부터 2008년 3월15일까지 총 2,000부를 발송 및 면접하면서 배부하여 975부를 회수하였으나 직장인 위주로 하다보니 신규직원 등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납부경험이 없거나 불신답변자 등 262명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납부경험이 있는 71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에서 체납경험이 있는 자(불성실납세자) 252명을 추가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회수가 낮은 이유는 세금문제는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으로 설문지 작성에 대한 불신과 회피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 SPSS windows 12.0을 사용하였다. 불성실납세자의 특성별로 연령별, 재직기간별, 소득수준별 등의 납세의식요인별인식의 차이를 t-test와 ANOVA를 사용하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성별 납세의식요인인식과 결혼여부, 교육정도 등의 납세의식요인 인식에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별 차이검증을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척도식 응답형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설계하였고, 납세의식영향요인(지방세공평성 인지도,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해, 지방세복잡성,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만족도)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를 다중회귀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가설검증을 하였고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추가분석(로지타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설문자료의 일반적 기술통계량을 살펴보고, 가설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추가분석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다.

### 제1절 기술통계

####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 응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유효설문지 713부의 자료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4-1> 과 같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첫째, 성별을 보면 남성이 511명(71.7%)이고 여성은 202명(28.3%)이다.

둘째, 혼인여부로 기혼인자가 583명(81.8%)이고 미혼인자는 130명(18.2%)이다.

셋째, 연령은 20~30대가 406명(56.9%), 40~50대가 307명(43.1%)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교육수준을 보면 고졸이하가 165명(23.1%), 대졸이상이 548명(76.9%)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걸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거주지별로 서울특별시가 107명(15.0%), 경기도가 73명(10.2%), 인천이 62명(8.7%), 강원도가 54명(7.6%), 경상남도가 99명(13.9%), 경상북도가 63명(8.8%), 충청북도가 43명(6.0%), 대구가 80명(11.2%), 광주가 50명(7.0%), 제주도가 82명(11.5%)으로 10개 시·도에서 조사되었다.

<표 4-1> 표본의 특성

구 분		내 용	빈 도	퍼센트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511	71.7
		여	202	28.3
	혼인여부	기혼	583	81.8
		미혼	130	18.2
	연령별	20~30대	406	56.9
		40~50대	307	43.1
	교육수준별	고졸 이하	165	23.1
		대졸 이상	548	76.9
	거주지별	서울특별시	107	15.0
		경기도	73	10.2
		인천광역시	62	8.7
		강원도	54	7.6
		경상남도	99	13.9
		경상북도	63	8.8
		충청북도	43	6.0
		대구광역시	80	11.2
광주광역시		50	7.0	
제주도		82	11.5	
사회경제학적 특성	종사분야	일반회사원	279	39.1
		공무원	330	46.3
		자영업, 기타	104	14.6
	소득수준	6천만원 이하	270	37.9
		6천만원 초과	443	62.1
	재산세납부 수준	20만원 미만	439	61.6
		20~50만원	159	22.3
		50만원 초과	115	16.1
	부동산 보유형태	주택 1채만 보유	391	55.0
		토지만 보유	82	11.5
		주택과 토지	176	24.8
		주택, 토지 이외	62	8.7
	부동산 외의 자산	부동산이외자산보유	581	81.5
		미보유	132	18.5
	지방세 납부시점	1~5년전 부터	364	51.1
		6~10년전 부터	218	30.6
11~20년전 부터		112	15.7	
21년전 이전		18	2.5	
납세자 구분	성실, 불성실	체납경험있음	252	35.3
		체납경험없음	461	64.7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보면

첫째, 종사분야는 일반회사원이 279명(39.1%), 공무원이 330명(46.3%), 자영업, 기타가 104명(14.6%)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소득수준이 6천만원이하가 270명(37.9%)이고 6천만원초과가 443명(62.1%)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재산세 납부수준을 보면 20만원 미만이 439명(61.6%), 20~50만원이 159명(22.3%), 50만원 초과가 115명(16.1%)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부동산보유형태를 보면 주택1채만 보유한 집단이 391명(55.0%), 토지만 보유가 82명(11.5%), 주택, 토지이외의 부동산보유가 62명(8.7%)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부동산이외의 자산보유여부를 보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581명(81.5%)이고, 미보유자가 132명(18.5%)으로 조사되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일반 자산 등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성실납세자와 불성실세자를 보면 체납경험이 없는 성실납세자가 461명(64.7%)이고, 체납경험이 있는 불성실납세자가 252명(35.3%)으로 조사되었다.

## 2. 타당성 분석

타당성 검증이란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올바르게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대상의 상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납세의식영향요인의 측정도구가 타당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납세의식영향요인을 형성하고 있는 차원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 항목에 대한 여러 항목들 간의 상호관계로부터 공통분량을 구하고 측정치의 중요성을 찾아내어 몇 개의 요인 군으로 추출해내기 위해, 최초의 요인 행렬을 주성분 분석법으로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 이용된 측정도구는 대부분 기존문헌에서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도구들이나 문장의 의미가 응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초요인분석에는 29개 문항으로 개념5개의 독립변수와 1개의 종속변수로 구성하였으나 요인적재량이 0.5가 되지 않아 일부 문항을 제거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요인분석결과는 24개

문항으로<표 4-2>에서 제시하고 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채택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직각회전법(Varimax rotation)을 사용하였다. 타당성검증결과 전체분산의 63.863을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 중 연구모형에 따라 요인 1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친절, 지방자치단체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행정서비스만족도로 하였고, 요인 2는 지방세제의 관련 규정 등의 복잡성 여부를 확인 하는 것으로 지방세복잡성으로 하였고, 요인 3은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종속변수인 납세의지로 하였다.

요인 4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실납부자와의 차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으로 하였으며 요인 5는 지방세법의 공정성, 부동산관련지방세 납부가 공평한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라 하였고, 요인 6은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식을 묻는 것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이해로 하였다.

<표 4-2> 납세의식 영향요인 타당성 검증결과

회전된 성분행렬(a)						
설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만족도	복잡성	납세의지	체납강도	공평성	이해도
A9_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에 만족	<b>0.681</b>	-0.006	0.174	0.097	0.236	0.385
A10_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만족	<b>0.66</b>	-0.106	0.212	0.1	0.19	0.446
A26_지방세무행정이 납세자 편의에 노력	<b>0.531</b>	-0.016	0.291	0.009	0.43	0.199
A22_부동산관련 재산세법 관련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복잡	-0.041	<b>0.801</b>	0.235	0	-0.059	-0.06
A12_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	0.181	<b>0.784</b>	0.124	-0.145	-0.128	0.127
A23_재산세가 토지/건물/주택 등의 세율복잡	0.003	<b>0.73</b>	0.301	0.01	-0.015	-0.03
A2_지방세법 구조가 복잡	0.28	<b>0.665</b>	0.336	-0.096	-0.155	0.011
A29_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임	0.205	0.362	<b>0.77</b>	-0.145	0.03	0.025
A16_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	0.267	0.341	<b>0.764</b>	-0.187	0.122	0.035
A24_부동산관련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	0.256	0.464	<b>0.732</b>	-0.175	0.036	0.046
A13_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일 내에 납부	0.256	0.483	<b>0.691</b>	-0.236	0.004	0.101
A20_지방세체납에 대한 행정적 규제 엄격	0.055	-0.159	-0.006	<b>0.801</b>	0.161	-0.112
A8_고의적으로 체납시킨 사람은 행정적 불이익이 크다	0.052	-0.097	-0.262	<b>0.755</b>	-0.034	0.098
A21_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강력	-0.122	0.073	0.079	<b>0.754</b>	0.094	0.05
A4_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분이 강력	-0.057	-0.178	-0.335	<b>0.651</b>	0.208	-0.002
A25_부동산관련 지방세는 공평하게 부과	0.183	-0.097	0.02	0.232	<b>0.742</b>	0.104
A28_현재의 지방세법구조가 공평과세실현	0.191	-0.024	0.081	0.192	<b>0.713</b>	0.104
A3_부동산관련 재산세 부과가 공평하다고 생각함	0.115	-0.008	-0.347	0.024	<b>0.584</b>	0.37
A11_공평한 재산세를 납부	0.092	0.074	0.007	0.125	<b>0.799</b>	0.147
A17_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과세표준공평	0.231	-0.101	0.094	-0.054	<b>0.617</b>	0.468
A15_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음	-0.043	0.072	0.069	-0.1	0.243	<b>0.735</b>
A7_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가 다르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	-0.145	0.406	0.207	-0.261	0.041	<b>0.621</b>
A6_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음	-0.234	0.234	0.28	-0.211	0.291	<b>0.577</b>
A18_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0.009	0.323	0.551	-0.188	0.058	<b>0.519</b>
요인추출 방법 :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8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습니다.						



### 3.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어떤 대상을 반복하여 측정하여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측정방법이 정확하여 믿을만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들간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과학적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나 신뢰도가 낮으면 좋은 과학적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측정의 가장 중요한 단면은 아닐지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값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모은 신뢰성 계수는 <표 4-3>과 같다.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Nunnally(1978)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계수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납세의식영향요인 전체는 .789, 지방세공평성인지도는 .806, 부동산관련지방세이해 .778, 지방세복잡성 .738,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774, 행정서비스만족도 .858이고 종속변수인 납세의지가 .855로 모두가 0.6이상이어서 신뢰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결과

변 수	최초항목수 (문항번호)	최종항목수 (문항번호)	Cronbach's a
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독립변수)	29	24	.789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5(3,11,17,25,28)	5(3,11,17,25,28)	.806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	5(1,6,7,15,18)	4(6,7,15,18)	.778
지방세 복잡성	5(2,12,22,23,27)	4(2,12,22,23)	.738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	5(4,8,14,20,21)	4(4,8,20,21)	.774
행정서비스 만족도	5(5,9,10,19,26)	3(9,10,26)	.858
납세의지(종속변수)	4(13,16,24,29)	4(13,16,24,29)	.855

#### 4. 변수별 기초통계량

기초통계량에서는 전체 설문 문항들에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설문에 이용된 각 문항들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표 4-4>에 나타나 있다.

<표 4-4> 변수별 기초통계량

변 수	범위	최소값	최대값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공평성인지도	20	5	25	15	14.533	3.436
지방세제의이해	20	5	20	14	15.017	3.505
지방세복잡성	20	5	20	13	14.532	2.718
채납처분강도에 대한인식	16	4	20	11	10.394	2.946
행정서비스만족도	20	3	15	9	9.717	3.793
납세의지(종속변수)	20	8	20	16	16.533	2.486

변수별 기초통계량을 보면 독립변수인 지방세제의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평성인지도, 지방세복잡성, 채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순으로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채납처분강도인식과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평균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 5.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제시된 이론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설검증을 실시하기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이론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상관관계분석은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납세의식영향 요인과 성실납세의지와 상관분석표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강 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공평성 인지도	1					
지방세제의 이해	.375(**) 0.000	1				
지방세 복잡성	-.193(**) 0.000	0.006 0.873	1			
체납처분 강도인식	.367(**) 0.000	-0.006 0.88	-0.056 0.133	1		
행정서비스 만족도	.663(**) 0.000	.568(**) 0.000	-.162(**) 0.000	.198(**) 0.000	1	
성실납세 의지	.191(**) 0.000	.478(**) 0.000	0.071 0.059	-.137(**) 0.000	.319(**) 0.000	1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위의 <표 4-5>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방세공평성인지도, 부동산관련지방세 이해,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4개 요인이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그러나 지방세 복잡성요인은 성실납세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P < .05$ ). 공평성인지도와 지방세제의 이해,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공평성인지도나 지방세제의 이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면 납세의지가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고 있다.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납세의지가 높은 응답자의 경우는 체납처분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성실납세의지가 낮은 응답자 경우는 체납처분 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제2절 분석결과 및 논의

### 1. 가설검정

단순회귀모형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단일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인과관계 구조는 여러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다수의 독립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다중회귀분석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다중회귀분석은 오차분산(Error Variance)을 줄이고 종속변수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나 예견이 가능하고, 다른 독립변수의 값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인 비교보다 정밀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즉, 회귀분석기법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며 통계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법에 비해 정밀한 추정 및 예측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영향요인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납세의식 영향요인들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다중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 (P값)
(상수)	.510		.630	.529
공평성인지도	.078***	.239	4.563	.000
지방세제의 이해	.370***	.628	12.915	.000
지방세복잡성	-.031	-.056	-1.287	.198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00	.000	-.009	.993
행정서비스만족도	.173***	.237	5.276	.000

$R^2(.360)$ , 수정 $R^2(.358)$   $F(78.998)$  유의 확률(.000)\*\*\*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R^2$ 는 .360이고, 수정  $R^2$ 은 .358이므로 회귀식이 설명력이 높고 P값이 .000이며, F값이 78.998이므로 회귀식이 유의하다고 판단된다.

### 1) 부동산관련 지방세공평성 인지도가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세공평성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즉 부자와 빈자,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상이한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공평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왔고 조세의 공평성은 납세의지에 정(+)의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가설1을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 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가설1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4-6>에 제시되어 있다. <표 4-6>을 보면 공평성인지도의 회귀계수가 .078이고 t값이 4.563으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세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하여 부과되고 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일반건축물의 경우도 과세표준을 고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도 취득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여 과세표준결정이 단일화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 2)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가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조세당국의 조세정책은 납세자가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 경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납세순응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세법지식은 납세의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



구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도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가설2를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제의 이해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4-6>에 나타나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의 회귀계수가 .370이고 t값이 12.915로 나타났다 ( $P < .001$ ). 즉,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가 납세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세제의 이해, 즉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지식이 높으면 납세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납세자에게 관련 세제의 변경 등에 대하여 안내 등을 직접적으로 통지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부과 전에 예정세액 등을 미리 통지 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지방세복잡성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법이 복잡해지고 새로운 조세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납세의식에 대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성실납세와 관련하여 세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하면 성실납세 의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제의 복잡성이 성실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 복잡한 방법에 의하여 부과되고 있어 가설 3을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하였다.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이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체납은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를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체납처분은 강제징수 방법으로서 납세자가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의 강화

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거나 억지 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왔다. 본 연구에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처분의 강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으로 보아 가설4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 체납처분강도 인식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가설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 5)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행정이나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는 납세관련자의 납세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납세자가 조세납부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하는 인식은 납세자의 납세의지의 척도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순응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납세순응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왔다.

부동산관련 지방세에서도 지방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가설5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설정하였다.

가설5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가 <표 4-6>에 나타나 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회귀계수가 .173이고, t값이 5.276으로 나타났다( $P < .001$ ). 따라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지방세정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만족도가 높으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지방세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을 개발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안, 재산세납부시기 조정, 납세자편의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자편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가설검정에 대한 추가분석

다중회귀 분석결과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 변수인 지방세복잡성과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의 납세의지에의 영향에 대한 가설이 기각되었다. 상관관계에서

는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설 검증한 결과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은 변수간의 영향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정한 개념이 한 개의 변인으로 조작적 정의되지 않고 여러 개의 변인으로 조작적 정의가 절대 유용한 방법이다. (김기문 등 연세대 경영연구소, 2004)

이러한 모형의 선택 방법에는 변수 추가법(Forward Selection Method)과 변수 제거법(Backward Elimination Method), 단계별 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이 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과 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모형1의 경우에는 공평성인지도와 지방세복잡성 변수를 제외하여 분석 하였다. 이는 공평성인지도의 경우는 상관관계분석에서 각 독립변수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제외하였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서 제외하여 분석 하였다. 모형1의 결과를 보면 수정  $R^2$ 은 .252이므로 회귀식이 설명력이 높고 P값이 .000이며, F값이 80.689이므로 회귀식이 유의하다.

지방세제의 이해와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 납세의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경우에는 상관관계분석에서와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지방세복잡성을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모형2의 결과를 보면 수정  $R^2$ 은 .256이므로 회귀식이 설명력이 높고 P값이 .000이며, F값이 60.518이므로 회귀식이 유의하다. 지방세제의 이해 변수가 납세의지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설검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3에서는 상관관계분석에서 독립변수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공평성인지도를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모형3의 결과를 보면 수정  $R^2$ 은 .257이므

로 회귀식이 설명력이 높고 P값이 .000이며, F값이 62.101이므로 회귀식이 유의하다. 지방세제의 이해 요인과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이 경우에는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복잡성의 경우는 상관관계분석에서와 다중회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음(-)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세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면 납세의지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단순화하여 납세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

지방세 체납처분 강도인식 변수의 경우에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완전모형
독립변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회귀계수
공평성인지도		0.032*		.078***
지방세제의 이해	0.292***	0.291***	0.013***	.370***
지방세복잡성			-0.37***	-.031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001	0.009	0.056	.000
행정서비스 만족도	0.037**	-0.02	0.086**	.173***
수정된 R <sup>2</sup>	.252	.256	.257	.358
F	80.689	60.518	62.101	78.998

\*\*\*P<.001, \*\*P<.005, \*P<.01

## 2) 다중로짓분석

로짓(logit)모형은 질적 변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변수의 값이 이원화(혹은 다원화)되어 있는 종속변수와 연속변수성향을 가진 변수 설명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원화된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Binary Logit 다원화된 종속변수의 경우에는 Multinomial Logit으로 불리기도 한다.

로짓분석 방법은 판별 분석에 비해 관련변수들이 정규분포 이어야 한다는 가정이 전제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선택확률이 로지스틱 함수를 취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오차항이 정규분포일 때에는 판별 분석에 의한 추정 방법이 로짓최우추정(logit maximum likelihood estimator)에 비해 효율성(efficiency) 측면에서는 우월하나 정규분포가 아니며 판별분석 방법은 일관성(consistency)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로짓 분석은 일반적인 선형 회귀식의 추정에 비해 특이한 관찰치가 모수추정에 Goldberger(1964)가 프로빗(probit) 분석방법을 제시한 후로 종속 변수가 범주변수인 경우의 계량 분석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주된 대상자가 직장인 등 비교적 성실 납세자이기 때문에 한 쪽으로 치우친 응답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이러한 표본의 편향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제거하고 변인들의 영향관계의 구조를 더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2분하여 종속변인을 재설정하고 로짓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수인 납세의지의 평균값이 16이므로 16점 이상은 1, 16점 미만은 0으로 하여 다중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다중로짓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 · E)	Wald	유의확률	Exp (B)
납세의지	공평성 인지도	0.082	0.037	4.9	0.027	1.085
	지방세계의 이해	0.311	0.036	73.709	0	1.365
	지방세 복잡성	-0.068	0.033	0.146	0.152	0.07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0.111	0.033	11.186	0.001	1.095
	행정서비스 만족도	0.02	0.035	0.332	0.564	0.98
	상수	-7.372	0.952	59.929	0	0.001

모형적합도( $X^2$ ) : 164.767, 분류정확도 : 86%

다중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X^2$ 은 164.767(유의수준 :  $P < .001$ )로서 설명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계의 이해, 공평성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제의 이해와 공평성인지도의 경우에는 다중회귀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도 납세의지에 (+)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나 다중로짓 회귀분석에서는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이 크면 납세의지가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에는 다중로짓 회귀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 3. 가설검정결과의 요약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결과〉

가설 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부동산관련 지방세이해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복잡성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4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이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5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제3절 추가분석

본 연구과정에서 표본의 특성 중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와의 구분이 되어져 두 집단간의 차이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사회경제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의지를 고

취시키고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와 체납 경험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인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 1.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와의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분석

#### 1)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와의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분석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와의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분석

납세의식영향요인	납세자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양쪽)
지방세공평성 인지도	성실	460	24.020	5.689	-38.442	0.000***
	불성실	251	12.104	2.536		
지방세이해	성실	460	15.259	3.123	25.558	0.000***
	불성실	251	9.209	2.957		
지방세복잡성	성실	461	9.158	2.319	30.118	0.000***
	불성실	252	16.333	3.371		
지방세체납처분 강도인식	성실	461	8.215	2.521	-26.93	0.000***
	불성실	251	13.870	2.942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	461	11.713	3.582	12.933	0.000***
	불성실	251	8.397	2.597		
성실납세의지	성실	461	8.456	2.347	7.549	0.000***
	불성실	252	7.059	2.373		

<표 4-9>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와의 납세의식영향요인 차이분석표를 보면 성실납세자가 불성실납세자간의 공평성인지에 차이가 있음은 부동산관련지방

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납세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평한 지방세부과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결정에 있어서 법인간의 거래와 개인간의 거래시 과세표준결정이 다른 점 등에 대하여도 일관성 있는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재산세의 경우도 주택과 일반 건축물의 과세표준결정을 고시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세의 지식을 묻는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에도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차이가 있고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지방세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관련지방세에 대하여 소극적 홍보에서 적극적 홍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세제의 이해가 높으면 납세의지가 높다는 것이므로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면 납부세액을 미리 예정 통지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취득세 등의 경우에도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납부안내 등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지방세복잡성의 경우에 성실납세자에 비하여 비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가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단순화를 위하여 현행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는 방안이라든가 재산세 부과시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폐지 등 개선이 이루어져 지방세 세목을 줄여 단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방세체납처분강도 인식의 경우는 불성실납세자는 체납처분강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고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체납처분에 대한 성실납부자의 인식처럼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을 좀더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에 성실납세자가 불성실납세자에 비하여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만족은 납세의지를 이끌어 올리는 것이므로 부동산관련 지방세부과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좀더 세밀한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제도, 예를 들면 지방세마일리지제도 등을 이용하여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행정비용을 면제하거나 전자고지 교부자에 대하여는 행정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불성실납세자의 특성별 납세의식 영향요인 차이 분석

지방세체납경험자인 불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으로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 1) 성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 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공평성인지도와 행정서비스만족도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성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성별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남	N	167	166	165	167	167	167
	평균	14.377	17.976	18.085	13.431	9.263	21.85
	표준편차	3.244	3.701	2.665	3.412	2.385	2.478
여	N	84	84	84	84	84	83
	평균	15.458	18.929	17.524	14.143	10.107	21.711
	표준편차	2.760	3.277	2.247	3.275	2.190	2.578
합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3.468	2.198	1.367	1.268	3.717	1.908
	유의확률	0.033*	0.113	0.257	0.283	0.026*	0.151

<표 4-10> 성별 성실납세의식 영향 요인 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공평성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만족도 역시도 여성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혼인여부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혼인여부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세제의 이해와 행정서비스만족도 요인 등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혼인여부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혼인 여부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제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기혼	N	162	162	161	163	163	162
	평균	14.889	18.846	17.77	13.73	9.871	21.914
	표준편차	3.215	3.275	2.493	3.512	2.307	2.513
미혼	N	89	89	89	89	89	89
	평균	14.472	17.27	18.124	13.551	8.944	21.551
	표준편차	2.947	3.899	2.610	3.112	2.313	2.532
합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1.024	11.592	1.114	0.163	9.285	1.192
	유의 확률	0.313	0.001**	0.292	0.687	0.003**	0.276

<표 4-11> 혼인여부별 성실납세의지 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혼자의 경우가 지방세제의 이해도도 높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령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세제의 이해요인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연령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연령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20~30대	N	175	175	174	175	175	175
	평균	14.629	17.811	17.954	13.577	9.406	21.823
	표준편차	3.069	3.708	2.475	3.176	2.247	2.541
40~50대	N	76	76	76	77	77	76
	평균	15	19.382	17.763	13.87	9.857	21.697
	표준편차	3.250	3.020	2.683	3.792	2.548	2.487
합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0.749	10.572	0.299	0.403	1.986	0.131
유의확률		0.388	0.001**	0.585	0.526	0.16	0.718

<표 4-12>연령별 납세의식 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제의 이해도는 40~50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 4) 교육수준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교육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교육수준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고졸 이하	N	54	54	53	54	54	54
	평균	14.333	17.611	17.472	14.518	9.389	21.296
	표준편차	3.566	2.884	2.722	3.669	2.750	2.439
대졸이상	N	197	197	197	198	198	197
	평균	14.853	18.472	18.01	13.434	9.586	21.919
	표준편차	2.990	3.736	2.478	3.256	2.230	2.532
합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1.173	2.463	1.89	4.449	0.298	2.601
유의확률		0.28	0.118	0.17	0.036*	0.586	0.108

<표 4-13> 교육수준별 납세의식영향 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체납처분에 대한 강도인식이 고졸이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별로 체납처분강도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며 고졸이하 집단이 상대적으로 체납처분 강도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종사분야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종사분야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 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공평성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체납처분강도에 대한 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의지는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종사분야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종사분야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일 반 회사원	N	112	111	112	112	112	112
	평균	13.964	16.531	17.982	13.973	8.812	21.482
	표준편차	3.299	3.182	2.290	3.042	2.399	2.336
공무원 집 단	N	94	95	94	95	95	94
	평균	15.606	20.158	17.691	12.547	10.547	22.628
	표준편차	2.612	3.375	2.763	3.451	1.809	2.603
자영업 기 타	N	45	45	44	45	45	45
	평균	14.867	18.667	18.114	15.267	9.244	20.778
	표준편차	3.223	2.788	2.652	3.236	2.506	2.285
합 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7.478	33.43	0.53	11.687	16.249	10.378
유의확률		0.001**	0.000***	0.589	0.000***	0.000***	0.000***

<표 4-14> 종사분야별 납세의식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평성인지도가 공무원이 타 집단에 비하여 공평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이해의 경우도 공무원집단이 타 집단에 비하여 이해도가 높고, 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는 자영업, 기타집단이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는 공무원집단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실납세의지의 경우는 공무원집단이 납세의지

가 높고 다음은 일반회사원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집단은 상대적으로 공평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다른 직업집단의 경우와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보다는 다른 직업집단이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등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이며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이해에 있어서도 공무원집단은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정세액 통지 등을 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무원집단은 낮게 나타나고 다른 직업 집단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대한 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행정서비스만족도의 경우에도 공무원집단은 상대적으로 만족하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직업집단은 만족도가 낮은 결과이므로 지방세정의 납세자편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 6) 소득수준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종사분야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소득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소득수준별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6천만원 이하	N	117	118	117	118	118	117
	평균	14.991	18.458	17.632	13.763	9.814	21.573
	표준편차	3.212	3.498	2.625	3.580	2.442	2.506
6천만원 초과	N	134	133	133	134	134	134
	평균	14.522	18.135	18.128	13.582	9.306	21.97
	표준편차	3.038	3.661	2.441	3.187	2.242	2.528
합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1.411	0.505	2.388	0.18	2.958	1.557
유의확률		0.236	0.478	0.124	0.672	0.087	0.213

### 7) 납부수준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납부수준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세제의 이해요인이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납부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한 차이분석표를 보면 지방세제의 이해요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집단이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수준별로 지방세제의 이해도를 보면 20만원 이하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제의 이해도가 납부수준별로 다르다는 것이므로 지방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정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 4-16> 납부수준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납부수준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20만원 미만	N	32	32	32	32	32	32
	평균	16.156	13.000	11.688	15.250	9.063	8.250
	표준편차	3.511	3.776	2.890	3.716	2.488	2.540
20~50만원	N	138	137	138	138	138	138
	평균	14.870	11.292	12.109	16.355	8.290	8.370
	표준편차	2.594	3.822	2.505	3.374	2.441	2.694
50만원 초과	N	81	82	80	82	82	81
	평균	15.568	11.915	12.263	16.720	8.500	7.938
	표준편차	3.674	2.936	2.453	3.171	2.104	2.193
합 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5.259	11.713	12.104	16.333	8.456	8.21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2.831	3.197	0.586	2.215	1.434	0.749
유의확률		0.061	0.043*	0.557	0.111	0.24	0.474

### 8) 납부기간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납부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세제의 이해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납부기간별 성실납세의지 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이해도인식에서는 6~10년 집단이 가장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7> 납부기간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납부기간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 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체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 스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1~5년전 부터	N	139	139	140	140	140	139
	평균	14.77	17.77	17.807	13.679	9.464	21.683
	표준편차	2.867	3.640	2.473	3.255	2.239	2.408
6~10년전 부터	N	80	80	78	80	80	80
	평균	14.9	19.087	18.038	13.612	9.55	21.825
	표준편차	3.524	3.439	2.858	3.212	2.535	2.898
11~20년전 부터	N	28	28	28	28	28	28
	평균	14.464	18.25	17.929	13.607	9.786	21.964
	표준편차	3.133	3.481	1.980	4.417	2.166	1.953
21년 이전부터	N	4	4	4	4	4	4
	평균	12.5	20.5	18	14.75	10.5	23.25
	표준편차	3.317	1.732	2.160	3.304	3.873	1.893
합 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0.831	2.871	0.142	0.147	0.371	0.577
	유의확률	0.478	0.037*	0.935	0.932	0.774	0.631

### 9) 부동산 보유 유형별 분석

조사대상자를 부동산 보유 유형별로 구분하여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태도 차이 여부를 일원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알아본 결과 성실납세의지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부동산 보유 유형별 납세의식영향 요인차이 분석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8> 부동산 보유 유형별 납세의식영향요인차이 분석표

부동산보유 유형		공평성 인지도	지방세제의 이해	지방세 복잡성	채납처분 강도인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성실납세 의지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다	N	113	114	114	114	114	113
	평균	14.717	18.21	17.579	13.746	9.658	21.628
	표준편차	3.084	3.416	2.506	3.443	2.225	2.533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	N	52	51	50	52	52	52
	평균	14.827	18.098	18.12	13.673	9.058	21.404
	표준편차	3.079	3.900	2.569	3.098	2.645	2.844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N	58	58	58	58	58	58
	평균	15.19	19.207	18.448	14.017	9.948	22.586
	표준편차	3.137	3.099	2.393	3.322	2.274	2.136
주택, 토지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N	28	28	28	28	28	28
	평균	13.75	17.036	17.643	12.607	9.143	21.464
	표준편차	3.273	4.238	2.778	3.624	2.305	2.333
합 계	N	251	251	250	252	252	251
	평균	14.741	18.287	17.896	13.667	9.544	21.785
	표준편차	3.123	3.582	2.536	3.371	2.347	2.521
F		1.36	2.524	1.75	1.154	1.694	2.7
	유의확률	0.256	0.058	0.157	0.328	0.169	0.046*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조세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재산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납세의식에 대하여 부동산관련 납세자들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시스템의 납세자편의와 효율성 있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의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성실 납세를 고양시키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지방세제의 성실납부의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간의 다원화된 사회구조가 존재하는 현실 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어느 한 가지 가치기준으로만 편향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지는 사회상황 그리고 심리적 상황에 따라서 이해집단별로 서로 이율배반적, 아전인수 격의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수가 동의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운영은 지방정부의 커다란 편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관한 5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이들이 성실납부 또는 지방세 성실납부의지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713명의 설문지 자료를 가지고 5개의 가설을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SPSS 통계패키지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지방세공평성인지도가 납세의지에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관련 지방세가 공평하면 납세의지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공평한 부동산관련 지방세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결정 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운영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자에 대한 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성실납부자와의 불성실납부자간의 차별화 등으로 공평한 세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부동산관련지방세이해가 납세의지에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 즉 지방세관련 지식이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납세의지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직접적인 예정세액통지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3.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의식영향요인인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납세의지에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서비스만족도가 높으면 성실납세의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 행정에 있어서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의 납세편의도모 및 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과 지방세복잡성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하여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로짓분석에서 지방세복잡성은 납세의지에 음(-)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고, 이는 지방세세목을 통합하는 등 지방세법구조를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체납처분강도인식의 경우에는 다중로짓분석에서 납세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법적재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성실, 불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식영향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분석한 결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에 대하여 상대집단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각 납세의식영향요인별에 대한 인지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정에 세밀한 납세자편의시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책적 제의

본 연구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경험자의 납세의식영향요인별 납세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또한 성실납세자와 불성실납세자간의 납세의식영향요인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관련 지방세납세자들의 납세순응을 가져오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시의성 있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첫째, 재산세 과세표준의 결정함에 있어서 직전년도 재산세와 당해연도 예상세액 통지와 과세표준을 고시하여 공평한 지방세운영 방안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방법이 2004년 이후에 급격한 변동으로 납세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재산세과세표준 결정에 있어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로,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된다. 이에 개별공시지가 변동통지라는 경우에 직전년도 재산세와 당해연도 재산세 예상세액을 미리 통지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개별주택가격결정과 개별공시지가의 업무의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이며, 지방세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으나 지방세 담당부서로 일원화하여야 된다. 또한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다보니 실거래가액보다 과세표준이 높은 경우도 발생하는 실정이고, 건물과 토지를 따로 시가가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 형태는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의 경우도 가격을 결정·고시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의 공평성을 기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세납부홍보를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세에 대한 홍보는 자치단체별로 정기분 지방세 납부의 경우 “○월은 ○○세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소극적인 홍보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연합으로 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안내 즉 예상세액 통지 또는 정

기분 지방세납기 1개월 전에 부과된다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적극적 홍보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지금의 시·도지사 협의회 또는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이용하는 방안)를 구성하여 전국공동으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납부의지를 고취하는 방안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지방세제이해도가 높으면 납세의지가 높다는 결과이므로 지방세 납부자들의 지방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편의시책 운용이다.

지방세의 부과고지는 우편송달과 직접송달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실정이나, 자동이체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지방세고지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시행으로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고지서발송 등 교부가 가능함에도 실적은 미비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고지인 경우 신청을 받아 납세자에게 우편 송달료와 행정비용을 되돌려주는 방안(건당 약3천원 정도) 즉 이를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행정수수료 등에서 감면하는 등 이를 적립하는 제도(마일리지제도 등)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납부의 경우도 재산세처럼 정기분의 경우 자동이체를 통한 자동납부의 경우 일정률을 환급하는 제도(납부세액의 0.1% 정도로 하여 최저 1천원, 최고한도 10만원정도) 또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여 이를 적립하여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사유 중 가장 많은 이유가 납기 한이 경과되어서 납부를 하지 못했다는 반응과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이 두가지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다면 이를 해소하고 납세자들의 납부편의 도모는 물론이고 징세비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가칭 “납세자편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고려해 볼만하다. 이는 곧 공평한 지방세제도운영은 물론 지방세무행정서비스만족도 제고이다.

넷째,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가산세적용에 있어 납세자의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납세자 편의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자가 30일내에 과세대상물건 소재지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즉 자진신고 납부자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한 납세자에게 지방세담당부서에서 신고납부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안내문 등을 발송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보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고(약 60일정도 또는 2개월 이내) 기간 내에 납부안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한내 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일정세액을 공제(약 5%정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세인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은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동기부여는 물론 실질적인 혜택이고 성실납부자와 불성실납부자와의 차별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고 지방세행정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지방세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제도 운영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조사한 결과 부동산관련 지방세 납부자의 납부의식은 아주 높아 보인다. 이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 납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세금을 체납하지 않겠다는 설문에 80%이상의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이에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우대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성실납부라 함은 부과된 또는 확정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를 뜻한다. 납부액의 일정액(납부세액의 약0.1%, 최고 한도 10만원정도)을 적립하여 이를 보상하는 제도, 또한 행정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이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세관련 세무행정서비스를 만족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재산세 납부시기 등 기타 제도적 문제 등을 납세자 우선시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재산세 납부시기를 2005년 이전처럼 건물의 경우는 7월과 10월로 나누어 부과하는 방안이다. 7월 재산세, 8월 균등할 주민세, 9월 재산세가 부과되다 보니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많다. 재산세를 7월(건물분)과 10월(토지분)로 부과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또한 5만원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는 7월에 그 이상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있는데 이 경우도 30만원 정도로 상향하여 부과함이 바람직하다. 납세자들이 동일한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고지를 받다보니 이중납부로 오인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에 대한 행정비용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납세편의와 징세비절감을 위하여 30만원이하의 경

우는 1회부과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일곱째, 기타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이다.

지방세법을 단일세법에서 탈피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현행지방세 총칙편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세목편은 지방세거래세법, 지방세보유세법, 지방세기타법 등으로 하고 지방세감면규정은 지방세감면법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고 지방세법구조의 경우도 세목을 통합하는 등 단순화하여 좀더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쉽게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도 재산세처럼 세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규모 및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즉 주택거래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경우는 면제하고 6억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세율의 50%를 가산하는 방안 등으로 차별하고 기타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9억 이상 등의 경우에 50%가산하고 1억원 이하의 경우는 50% 감산하는 등 세율을 달리하여 일반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전문화와 지방세체납액징수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을 전담하는 전국단위의 통합 징수방안이 모색된다면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약 3~4명 정도 내지는 시·도의 세수규모로 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체납액징수통합부서를 운영한다면 징수효과는 커지고 인건비절감 등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체납담당공무원이 경우에는 계좌·소득 추적권 등이 없어 고질체납징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지방세담당공무원에게도 계좌·소득 추적권 등도 부여되어야 한다.

### 제3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제한점으로는 설문조사방법의 질적인 측면의 한계와 시간적,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위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표본 집단의 다양화와 측정변수의 확대 및 시간적 제한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일반화 된 변수의 사용으로 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있어서 설문조사의 방법이 갖는 질적 변수측정의 한계점을 들 수 있고, 시간적인 추세를 고려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세의 신설 내용 반영이라든가 과세표준적용비율이 높아지는 점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시점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수집된 자료는 응답자들의 지각내지 인지수준을 근거로 한 주관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측정대상, 시기, 방법, 납부자의 태도 등에 의해 편의를 지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납세순응과 관련된 각 변수의 측정이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의한 설문연구를 수행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부동산관련지방세 납부경험자 중에 직장인 등 비교적 성실납세에 가까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향후의 연구는 실제체납자 중 고질체납자 등 1억 이상의 체납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집단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요영향요인들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요인만을 사용하였고, 또한 실제부동산관련 지방세납부경험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의 부족 등으로 다양한 영향요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추후에는 설문지를 통한 자료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이 필요 하겠다.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본인이 박사학위 청구논문 작성을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며 부동산관련 지방세제의 연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익명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오직 연구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지방세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번호에 √나○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007. 10. .

지도 교수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 수 이 상 봉

연 구 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홍 성 선

(연락처 : 011-696-6211, acchong@hanmail.net)

I. 다음 질문들은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해당 칸에 √나 ○를 해주십시오.

설 문 내 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 다	매 우 그렇지 않 다
(1) 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 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	( )
(2) 나는 지방세법 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3) 나는 부동산 관련 재산세 부과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4) 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분 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5) 나는 지방세무행정을 함에 있어 인터넷납부, 카드납부 등 납세 편 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 각한다.	( )	( )	( )	( )	( )
(6) 나는 재산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으 로 하여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	( )
(7) 나는 토지나 주택 등 과세물건에 따라 재산세 부과가 다르게 부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	( )
(8) 나는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체납시 킨 사람은 행정적 불이익이 크다 고 생각한다.	( )	( )	( )	( )	( )
(9) 나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친절에 만족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10) 나는 내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다고 생각 한다.	( )	( )	( )	( )	( )



설 문 내 용

매 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매 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그렇지  
않 다                    않 다     않 다     않 다

- (11) 나는 현재의 부동산보유 수준에  
맞는 공평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    ) (    ) (    ) (    ) (    )  
있다고 생각한다.
- (12)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제가 복잡  
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13) 나는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기일  
내에 납부할 것이다. (    ) (    ) (    ) (    ) (    )
- (14) 나는 지방세체납처분은 국세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15)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    ) (    ) (    ) (    )
- (16)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성실하  
게 납부 할 것이다. (    ) (    ) (    ) (    ) (    )
- (17) 나는 부동산 지방세제인 취득세와  
등록세 경우의 과세표준은 공평하  
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18) 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 (    ) (    ) (    )
- (19) 나는 지방세 세무 상담을 하면서 내  
가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려  
움 없이 처리되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0) 나는 지방세체납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설 문 내 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 우 그렇지 않다

- (21)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2)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3) 나는 부동산지방세인 재산세가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세율이 모두 달라서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4)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 할 것이다. (    ) (    ) (    ) (    ) (    )
- (25)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된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6) 나는 지방세무행정이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7) 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8) 나는 현재의 지방세법구조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 (    )
- (29) 나는 세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이다. (    ) (    ) (    ) (    ) (    )

II. 다음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납세자들의 기본특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 )안에 √나 ○를 해주십시오.

(1) 귀하의 성은?

- ① 남 ( )                      ② 여 ( )

(2) 귀하의 혼인여부는?

- ① 기혼 ( )                      ② 미혼 ( )

(3)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    ② 30대 ( )    ③ 40대 ( )    ④ 50대( )    ⑤ 60대이상(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 ① 고졸이하( )                      ② 대졸 ( )                      ③ 대학원졸( )

(5) 현재 귀하의 거주지는? ( )

※ 현재 주민등록상주소지의 시·도를 적어주세요

(6) 귀하가 종사하는 분야는?

- ① 일반회사원 ( )                      ② 언론분야 ( )                      ③ 세무직공무원 ( )  
④ 그 외공무원 ( )                      ⑤ 세무관련업( )                      ⑥ 기타 ( )

(7) 귀하의 연간 총소득은?

- ① 3천만원이하 ( )                      ② 6천만원이하 ( )                      ③ 8천만원이하 ( )  
④ 1억원 이하( )                      ⑤ 1억원 초과 ( )

(8) 귀하는 부동산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납부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 )

※ 8번 문항에 ①번을 택하신 분은 (8-1)과 (8-2)를 응답해 주십시오

(8-1) 납부경험이 있다면 최근 1년간 납부한 재산세액은?

- ① 5만원 이하 ( )                      ② 20만원 이하 ( )                      ③ 50만원 이하 ( )  
④ 100만원 이하( )                      ⑤ 100만원 초과 ( )

(8-2) 부동산관련 지방세를 납부하기 시작한 것은?

- ① 1~5년전 부터 ( )    ② 6~10년전부터 ( )  
③ 11~20년전부터 ( )    ④ 21년 이전부터 ( )

(9) 귀하의 지방세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어떤 유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주택1채만 보유하고 있다.( )  
②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 ( )  
③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④ 주택, 토지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 )

(10) 귀하는 부동산 이외의 어떠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은행에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② 보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 )  
③ 금융자산, 보험, 주식 등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 )  
④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 )

(11) 귀하께서는 지방세를 체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 )

※ 11번 문항에 ①번을 택하신 분은 (11-1)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11-1) 체납경험이 있다면 지방세를 체납하신 이유는?

- ① 돈이 없어서 ( )  
② 세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 )  
③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 )  
④ 납부기한이 경과되어서( )  
⑤ 관심이 없어서 ( )  
⑥ 기 타 ( )

## 참고 문헌

### 1. 국내문헌

- 강명헌, 「부동산보유관련 재산세체계의 획기적개편을」, 나라경제, 2003.
- 공내식, 「부동산학개론」, 서울, 화영사, 1992.
- 곽윤식, 「민법총칙」, 서울, 박영사, 1992.
- 곽태원, 「조세론」, 서울, 법문사, 2002.
- 권강웅, 「지방세강론」, 서울, 조세통람사, 1992.
- \_\_\_\_\_, 「축소 지방세 해설」, 서울, 조세통람사, 2001.
- 김대영, 「재미있는 지방세」, 서울, 조세통람사, 1997.
- \_\_\_\_\_, 「부동산 세수구조 조성의 지방재정 파급 효과」, 서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1998.
- 김기옥, 「부동산 관련 세법론」, 서울, 법영사, 1992.
- 김영진, 「부동산학총론」, 서울, 법륜사, 1992.
- 김의효, 「지방세 실무」, 서울, 한국지방세연구회, 2007.
- 김준호, 「민법강의」, 서울, 법문사, 2001.
- 라병상, 「부동산관계세법」, 서울, 법륜사, 1984.
- 박우서, 「지방세부과·징수체계와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 오연천, 「한국조세론」, 서울, 박영사, 1992.
- 이원준, 「부동산조세론」, 서울, 경영문화원, 1983.
- 이원준·홍학표, 「부동산 조세이론과 실무」, 서울, 법륜사, 1993.
- 이철성, 「조세법」, 서울, 박영사, 1993.
- 이필우, 「조세론」, 서울, 법문사, 1994.
- 전동훈, 「지방세실무해설」, 서울, 영화조세통람, 2007.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1998.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5~2001.
- 행정자치부, 「토지세제의 연구」, 서울, 행정자치부, 2000.
- 행정자치부, 「지방세의 이론과 과제」, 서울, 행정자치부, 2000.



행정자치부, 「조세구조의 이론과 과제」, 서울, 행정자치부, 2000.

행정자치부, 「2006지방세담당공무원교재」, 서울, 행정자치부, 2006.

## 2. 논 문

강인애, “실학파의 조세사상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김공박, “재산보유과표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남호, “전북지역의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강민구, “지방세 세원배분 체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1998.

고병수, “세무대리인이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권영모, “납세자의 조세공편성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박사학위논문, 1994.

———, “조세공편성과 납세의지의 관계에 관한 상황적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 8권, 1997.

김석범, “법인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남기원,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문광주, “부동산양도인의 세제인지도가 성실납세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춘래, “납세자특성에 따른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성문옥, “지방세법상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1994.

성문옥, “광역시세와 자치구제의 조정방안세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신용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인지도가 조세의 회피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안종철, “납세관련자의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여용범, “부동산중개업자의 납세의식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윤말순,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1.
- 이덕영, “현행 지방세 세목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 이범관, “조세회피행위의 성실납세 유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영희,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6.
- 이원중, “외식사업자의 조세공평성인식과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이위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1996.
- 이일용, “소유경영자의 개인적 특성이 납세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9.
- 이재성,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3.
- 전동훈, “재산세부담의 공평성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전태영,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조성태, “한국의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80.
- 차길녕, “평균신고소득률이 납세자행동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박사학위논문, 2004.
- 채희우, “메시지 및 제재유형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최근주, “납세자의 세제인지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최환연, “지방세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부동산 과세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홍성선, “부동산지방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2002.

황이규,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3. 기 타

국회입법조사처, 체납행정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

내무부, 지방세정 연감, 1994~1997.

통계청, 사회조사통계보고, 200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연감, 1998~2006.

### 4. 외국문헌

Allingham, M. G. and A. Sandmo,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 1972, pp.323~338.

Alm, J., "A perspective on the Experiment Anaysis of Taxpaye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Vol. 66(4), 1991, pp.577~593.

Alm, J., B. Jackson, and M. McKee, "Estimating the Determinant of Taxpayer Compliane with Experimental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45(1). 1992. pp.107~114.

Alm, James, R Bahl, and M. Murray. "Tax Stucture and Tax Compliance",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72, 1990. pp.603~613

Andreoni, J., Erard, B. and J. Feinstein, "Tax Complinece", Journal of Econormic Literature, Vol. 36, June 1998). pp.818~860.

- Benjamini, Y. and S. Matal, "Optimal Tax Evasion and Optimal Tax Evasion Policy : Behavioral Aspect", W. Gaetner and A. Wenig(eds.), *The Economy of the Shadow Economy*. Berlin : Springer-Verlag, 1985, pp.245~264.
- Christian, C. W. and S. Gupta, "New Evidence on Secondary Evasio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66(4), (Spring 1993), pp.73~93.
- Christiansen, V., "Two Comments on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3. 1980 pp.389~393.
- Clotfelter, C. T., "Tax Evasion and Tax Rates :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V, (August 1983), pp.363~373.
- Cowell, F. A., "Tax Evasion with Labor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6, 1985, pp.19~34
- Cox, D., "Raising Revenue in Underground Economy", *Nation Tax Journal* Vol. 37(4), 1984, pp.283~288.
- Dobin, J. A. and L. L. Wilde, "An Empirical Analysis of Federal Income Tax Auditing and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Vol. 41(1), 1988, pp.67~74.
- Erarad, B., "Taxation with Representation : An Analysis of the Role Tax Practitioner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2(2), 1993, pp.163~197.
- Falkinger, J. and H. Walther, "Rewards versus Penalties :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Vol. 19(1) (January 1991). pp.67~79.
- Fischer, C. M. M. Wartick and M. M. Mark,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Vol. 11, 1992, pp.1~46.
- Fraser, N.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welfare state",

- Political Theory, 22(4), 1994, pp.591~618.
- Friedland, N. S. Maital and A. Rutenberg, "A Simulation Study of Income Tax Evas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0. 1978, pp. 107~116.
- Graetz. M. and L. Wild, "The Economic of Tax Compliance : Fact and Fantasy", *National Tax Journal*. Vol 38(3), 1985, pp.355~363.
- Hite P. A. and M. L. Robert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axpayer judgement on Rate Structure in the in the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3(2), (Fall 1991), pp.47~63.
- Kaplan, S. E. and P. Reckers, "A Study of Tax Evasion Judgements" , *National Tax Journal*, Vol. 38(1), 1985, pp.97~102.
- Kaplan, S. E., P. Recker, and S. Roark, "An Attribution Theory Analysis of Tax Evasion Related Judgement",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Vol. 14(3), 1988, pp.371~379.
- Long, S. B. and J. A. Swingen "An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Tax Law Complexity",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8(2), (Spring 1987), pp.22~36.
- Madco, S., A. Schepanski, W. C. Uecker, "Medeling Judgement of Taxpayer Compliance", *The Accounting Review*. Vol. 62(2), 1987, pp.323~342.
- Mason, R. and L. D. Calvin, "Public C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7(4), 1984, pp.489~496.
- Million, V. C.,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Guilty and Tax Complexity",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Associartion* Vol. 7(1), (Fall 1985), pp.19~33.
- Musgrave. R. 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 McGraw-Hill, 1959.
- Rice, E., "The Corporate Tax Gap : Evidence on Tax Compliance by Small Corporation", in J. Slemrod(ed), *Why People Pay Taxes*, Ann Arbor



- MI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2.
- Spicer, M. W, "Civilization at a Discount : The Problem of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Vol. 39(1) 1986, pp.13~20.
- Spicer, M. W. and L. A. Becker,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Vol. 33(1), 1980, pp.171~175.
- Spicer, M. W. and R. Hero, "Tax Evasion and Heuristics : A Research Not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6, 1985, pp.263~267.
- Spicer, M. W. and S. B. Lundstedt, "Understanding Tax Evasion", Public Finance, Vol. 31.(2), 1976, pp.295~305.
- Srinivasan, T. N.,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1973, pp.339~346.
- Schafer, R. B. and P. M. Keith, "Equity in marital role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980, pp.359~367.
- Singh, B, "Making Honesty the Best Polic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 1973. pp. 257~263.
- Slemrod, J. and N. Sorum, "The Compliance Cost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National Tax Journal, Vol. 37(3), 1984, pp.467~474.
- Song, Y. D. and T. E., Yarbrough,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Discrepan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8, 1978, pp.447~452.
- Torgler, B, "Tax morale in Asian countries,"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5, 2004, pp.237~266.
- Vogel, J.,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Vol. 27(4), 1974, pp.499~513.
- Witte. A. D. and D. F. Woodbury,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 The Case of the U.S.",

- 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Vol. 38(1), 1985.
- Yitzhaki. S.,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 1974, pp.201~202.
- Yong. J. C., "Factors Associarted with Noncompliance Evidence from Michigan Tax Amnesty Program",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16(2), (fall 1994), pp.82~105.

